

정기간행물번호

11-1480592-000902-01

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3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립생물자원관 옮김

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3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립생물자원관 옮김

---

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3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

국립생물자원관 옮김

저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역자	국립생물자원관
발행일	2015년 8월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난지로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ABS 정보서비스센터(www.abs.go.kr)
기획	이병희, 이상준, 박정준, 권군상, 서민환
번역초고	워드토피아(www.wordtopia.co.kr, word@wordtopia.co.kr)
번역교정	유진희, 김윤정, 박정훈, 이상준
번역감수	강명수, 엄기안, 오선영, 허인
디자인	베이스라인(www.baseline.co.kr)
인쇄	수프린팅

## 발간사

생물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및 유전자 다양성을 의미하는 생물다양성은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자원은 생물공학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원천소재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각 국가의 식량 주권 확보에 일조하는 등 인류의 복지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은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 기후 온난화 현상, 외래종의 침입 등 여러 위협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되면서, 세계 각 국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가치를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었으며, 1993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이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 간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의 이행 촉진을 위한 평창로드맵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바이오브리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등 평창로드맵 지원 방안이 채택되면서, 생물 다양성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세계 각 국에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브릿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간의 체계적·지속적 협력 체계의 유지가 가능해 질 것 입니다.

한편,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각 국가의 정상들은 생물 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체계 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수 년 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 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보충 협정으로,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구체화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세계 각 국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그 중 하나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생물 다양성협약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6년 생물 다양성협약이 자국 내에 효력이 발생되자 1998년 국가환경관리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07 of 1998)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에는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10 of 2004)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법은 자국 토착 생물자원의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이해당사자 간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그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다양성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08년에는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을 공포하였습니다. 즉,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전부터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서는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에서 발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South Africa’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ulatory Framework: Guidelines for Providers, Users and Regulators)”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공자, 이용자, 규제당국 등 각각 측면에서 상기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산업계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관련 적용 범위, 절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각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어, 타 국가의 생물자원 이용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번역서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의 및 이익공유 안내서”시리즈의 세 번째 발간물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을 발간한 바 있으며, IUCN에서 출판한 “나고야의정서 해설서”를 번역하여 두 번째 안내서로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의 안내서와 함께 본 번역서를 활용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내 산업계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발간물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번역 시, 가능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책을 접하시는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최대한 번역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독자분들의 고견을 받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국립생물자원관장**

## 일러두기

1. 본 번역물은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에서 발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 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South Africa’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ulatory Framework: Guidelines for Providers, Users and Regulators)”을 번역한 것이다.
2. 원 발간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environment.gov.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원 발간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2년에 발간한 것으로, 2013년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10 of 2004)과 2015년 5월 19일 개정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개정 규정(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4. 원 발간물과 본 번역물에 실린 견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목차

IV	발간사
VI	일러두기
XII	들어가는 말

## 1 서문

002	<b>1-1</b>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005	<b>1-2</b>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의 핵심 요소
008	<b>1-3</b>	생물탐사에 참여하는 그룹
009	<b>1-4</b>	가이드라인의 목적
010	<b>1-5</b>	가이드라인의 구성

## 2 제공자

014	<b>2-1</b>	서론
014	<b>2-2</b>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제공자
015	<b>2-3</b>	발견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
015	<b>2-4</b>	토착생물자원 및 지식에 대한 접근
016	<b>2-5</b>	공동소유의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
019	<b>2-6</b>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의 개시
021	<b>2-7</b>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협상에 필요한 정보
024	<b>2-8</b>	기대이익의 유형
025	<b>2-9</b>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체결
028	<b>2-10</b>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협상에 대한 지원
029	<b>2-11</b>	계약의 후속조치

## 3 이용자

032	<b>3-1</b>	서론
033	<b>3-2</b>	이용자 활동 및 관련 허가증
038	<b>3-3</b>	허가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42	<b>3-4</b>	자원 유형 및 수집 절차
043	<b>3-5</b>	전통지식 관련 작업
045	<b>3-6</b>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
045	<b>3-7</b>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048	<b>3-8</b>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의 협상 및 체결
051	<b>3-9</b>	협상 가능한 이익의 유형

## 4 규제당국

054	<b>4-1</b>	서론
055	<b>4-2</b>	각종 활동, 허가 및 발급당국의 구분
058	<b>4-3</b>	공법 고려의 중요성
062	<b>4-4</b>	이익공유계약 및 물질이전계약
063	<b>4-5</b>	이익공유계약의 평가 및 이익 배분
066	<b>4-6</b>	이해당사자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 및 확인
069	<b>4-7</b>	사전통보승인 절차 단계 파악
072	<b>4-8</b>	환경영향,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보전이익
073	<b>4-9</b>	허가증 발부

## 5 별첨

076	별첨 1	약어
080	별첨 2	용어설명
086	별첨 3	이익공유 유형
088	별첨 4	공동체 결의안 예시
089	별첨 5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주요 법률
094	별첨 6	유용한 웹사이트 및 연락처

# 목차



## 설명

---

006	설명 1	사전통보승인
006	설명 2	전통지식 및 토착지식
006	설명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기반을 둔 기회
007	설명 4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008	설명 5	법률에서 제외된 자원 및 활동
018	설명 6	공개된 전통지식
020	설명 7	승인 전 잠재적 이용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질문
021	설명 8	비공개계약
022	설명 9	물질이전계약 그리고/또는 이익공유계약에 필요한 정보
024	설명 10	물질이전계약 또는 이익공유계약 협상 전 잠재적 이용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질문
025	설명 11	다양한 이익 유형에 따른 장단점
028	설명 12	공동체 규약
029	설명 13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나?
033	설명 14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다양한 이용자
034	설명 15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 - 버빗원숭이에 대한 연구
036	설명 16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 스킨레티움 토르투오슴 상업화
043	설명 17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확인
056	설명 18	허가의 필요여부 확인
062	설명 19	의무준수 점검표 - 의무적인 절차상의 요건
065	설명 20	이익공유계약의 공정성 및 공평성 평가
065	설명 21	로열티 범위 검토

---



## 그림

---

004	그림 1	생물탐사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의 이용
019	그림 2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순서도
027	그림 3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개요
035	그림 4	발견 생물탐사 및 토착생물자원 수출
037	그림 5	상업적 생물탐사를 위한 일반 신청절차
041	그림 6	가치사슬의 단계별 허가증 필요여부

---



## 표

---

042	표 1	자원수집 절차의 주요사항
057	표 2	생물탐사 및 연구 관련 허가의 개요

---

## 들어가는 말

생물자원은, 다른 주요 자원처럼 세계 각 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 식물의 10%, 전 세계 파충류, 조류 및 포유류의 7%, 알려진 해안 해양 종의 15% 등 놀라운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자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록 풍부한 생물자원과 더불어, 세계 육지 표면의 2%를 차지하는 남아공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질병치료 및 상징적 목적을 위한 주요 소재 중 하나인 토착생물자원의 수많은 이용방법은 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의 생물다양성부국(mega-diverse country)으로 불리는지 알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생물자원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종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생물의 멸종은 놀라운 속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DEA)는 다른 입법적 조치와 함께 “2004년 국가 환경 관리 생물다양성법(2004년, 법 제10호;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Act No. 10 of 2004; ‘NEMBA’ 또는 ‘생물 다양성법’)” 및 “2008년 생물자원 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BABS) Regulations)”을 공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토착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며, 이해당사자 간에 토착생물자원의 탐사를 포함한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처럼 남아공이 비준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다양성법 제6장은 토착생물자원의 탐사행위와, 생물탐사 또는 그 외의 연구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을 수출하는 것을 규율하며, 토착생물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탐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해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또한 최근에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줄여서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은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규범과 표준뿐만 아니라 「멸종위협 또는 보호종(Threatened or Protected Species, TOPS) 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가 생물다양성 체계(National Biodiversity Framework), 주법령, 2005년 개정 특허법(Patents Amendment Act, 2005) 및 토착지식체계 정책(Indigenous Knowledge System Policy)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이 공포된 이래, 법에 따라 능력 배양과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익공유 및 물질이전계약의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과 체결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무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 있어서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것이며, 규정을 준수하기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법적 의무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상업적인 생물탐사를 계획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착생물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생물탐사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윌슨(E. O. Wilson)은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이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동안, 우리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생물다양성의 모든 부분을 보존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도구들과 함께 이 가이드라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규제 체계의 성공적인 집행, 그리고 더 나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 나은 아프리카, 더 나은 세계의 창조라는 우리의 목표를 충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모 에디스 에드나 모레와**  
수자원환경부 장관

**Bomo Edith Edna Molewa**  
Minister of Water and Environmental Affairs





# 1

---

## 서문

## 1

## 서문

## 1-1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지난 20년 간 생물자원의 국제거래에 대한 접근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이용국(주로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생물자원이 부족한 국가)과 제공국(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 간 교환 형태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제공국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은 생물자원 거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법률의 제정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법적 접근방식은 거래를 위해 생물자원의 수확 또는 수집에 참여하는 주체가 주로 사회의 최빈곤층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발견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전통지식(TK) 보유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유전자원 거래의 취급 및 생물탐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일괄타결(Grand Bargain)'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에게 기술이전을 포함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국은 이러한 이익을 수령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접근 및 이익공유' 또는 'ABS'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대한 여러 개념 중 일부는 ABS 이행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인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발되고 다듬어졌다. 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조치가 자원 및 지식의 부정합 유출을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에 2002년부터 CBD 당사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ABS 의정서를 협상해왔으며,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로써 ABS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마련되었다.

ABS와 관련된 기타 국제협약으로는 주요 작물 및 사료의 다자간 거래체계를 창설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과 농업, 식량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제지식재산권을 설정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등이 있다.

생물탐사, 즉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및 생화학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탐사는 「국가 환경 관리: 생물다양성법('NEMBA' 또는 '생물다양성법')(2004년 법 제10호)」 및 「2008년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BABS) 규정」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규제되고 있다. 환경부(DEA)는 이러한 법률을 관장하며, ABS를 위한 정보공유센터 또는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기타 다수의 법률도 있는데, 이는 별첨 5에 요약되어 있다. 그 중 특히 연관성이 높은 것은 특허신청자에게 유전물질 및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와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 및 이익공유의 증명을 요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978년 특허법 제57조의 개정안이다. 그리고 최근의 주요 사안은 전통지식과 연관된 명칭 또는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디자인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지식재산법 개정안(2010)의 공포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에서는 CBD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유전자원 정의와는 달리 생물탐사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정의를 두고 있다. CBD 상 정의는 신약에 사용될 새로운 유전자 또는 화학물질을 위한 생물물질 조사 같은 전통적인 생물탐사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십 년간 화장품, 생약 및 식품 등 기타 산업에서 천연물의 사용 증가와 함께 이러한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은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물다양성법에서는 '토착생물자원'(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IBR)을 살아있거나 죽은 토착종의 유기체, 그러한 유기체의 유전물질이나 파생물, 또는 토착종에서 발견한 유전물질이나 화합물을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변형한 화합물 및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토착종뿐 아니라 그 유전자원 또는 생화학물질을 포괄한다. 이에 '생물탐사'라는 용어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용을 위한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연구 또는 개발이나 응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생물탐사는 토착생물자원의 가공, 즉 판매행위 자체를 제외한 '원재료'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의 결과물을 모두 지칭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해당 자원을 수확 및 거래하는 자가 자원탐사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DEA)가 채택한 접근방식에 의하면, 만약 거래의 의도가 생물탐사를 촉진하

는 것인 경우 생물자원을 거래하는 자는 생물탐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 산업용 효소, 정유, 향신료, 향수, 화장품, 유화제, 올레오레진(oleoresins), 색소, 추출물, 신규 식물 품종 등의 제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증식하거나 판매한다면 생물탐사의 일부로 인식되며 생물탐사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루이보스 식물과 같은 토착생물자원의 재배 또는 원형의 원재료를 거래하는 것은 그 자원의 이용방식에 따라 생물탐사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단순히 '루이보스 차(Rooibos tea)'를 음료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루이보스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생물탐사가 아니지만, 해당 식물이 추출물 형태로 다른 제품에 사용된다면 생물탐사로 간주된다. 결국 거래자가 생물탐사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행위의 최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1 생물탐사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의 이용



## 1-2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의 핵심 요소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은 토착생물자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토착생물자원 그리고 해당될 경우 관련된 전통적 이용이나 지식을 포함한 생물탐사를 수행하려는 모든 자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 생물탐사 또는 기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려는 모든 자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하였고, 생물탐사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신할 때에 한하여 허가증이 발급된다.

생물다양성법은 생물탐사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통보승인을 부여해야 하는 다음 두 부류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 토착생물자원에 접근을 허락하는 자(예. 토지 소유자), 그리고
- 생물탐사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용방식 또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토착공동체

이익공유계약은 위 두 부류의 이해당사자와 모두 체결해야 하며, 이와 함께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이해당사자와 물질이전계약을 맺어야 한다.

생물다양성법은 또한 생물탐사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자금이 납입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급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이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발견 단계'와 '상업화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발견 단계에서 연구자는 토착생물자원이 상품으로 추가 개발될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를 탐색한다. 상업화 단계는 토착생물자원의 상업화 잠재성이 이미 파악된 단계이다. 발견단계의 연구를 진행하는 자는 수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연구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생물탐사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생물탐사 허가증은 상품화 단계에서만 요구된다.

수자원환경부는 생물탐사 허가증을 발급하는 당국이다.

외국인 또는 해외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또는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생물탐사 또는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토착생물자원의 수출은 공익을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공유계약 양식은 BABS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리스트는 적절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공유유형을 열거하고 있다(별첨 3 참조).

### 설명 1 사전통보승인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전에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 보유자의 사전통보승인이 필요하다. 물질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자원 또는 지식의 제공자가 접근허가를 부여하는데 있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원의 이용목적 및 수집방법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 설명 2 전통지식 및 토착지식

전통지식 및 토착지식이라는 용어는 종종 교차적으로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지식은 세대 간에 전해 내려온 오래된 지식을 의미할 수 있으며, 주로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토착지식은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은 전통지식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보한 지식을 뜻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통지식과 토착지식을 동일한 의미로 교차 사용한다.

### 설명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기반을 둔 기회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면서 고유종을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 대륙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식물의 10%,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의 7%, 그리고 알려진 모든 해양 생물종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존재 자체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또는 상업에 이용될 수 있는 해양, 담수 및 육상 동·식물과 미생물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광범위한 산업계, 즉 의약품, 생명공학, 원예학, 식물의학, 식음료, 종자, 작물보호 및 화장품 업계뿐 아니라 과학자의 관심도 끌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자원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공동체 및 주민은 의약, 영양 및 위생상 목적을 위한 토착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생물다양성과 관련 전통지식의 풍요로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큰 자산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현 세대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식물과 동물 전체, 그들의 유전물질, 그리고 그들이 발견되는 생태계로 구성된 남아공의 생물다양성. 삽화 제공: Meg Jordi

### 설명 4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토착생물자원의 보고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원이 고갈하여 취약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생물자원이 야생에서 조달되는 만큼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자원이용과 야생 생물종 보존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 일부 자원은 전통 약품 제조를 위해 이용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그 지역에서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상품화 전에 해당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야생 생물종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확 기술과 같은 보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상업적 재배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재배에 필요한 역량 및 자원을 갖추지 못한 야생 수확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설명 5 법률에서 제외된 자원 및 활동

다음 자원 및 활동은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인간 유전자원
- 외래 동식물 또는 기타 생물
- ITPGRFA 에 열거된 자원
-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수행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
- 수출업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당국에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를 위한 현지의 토착생물자원의 수출
-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상업용 제품의 거래
- 절화 및 장식용 식물시장을 위한 식물종의 인공증식 및 재배
- 소비를 위한 수경재배 및 바다양식 활동

## I-3 생물탐사에 참여하는 그룹

생물탐사에는 광범위한 그룹이 참여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룹이 포함된다.

- 생물물질을 수집하며 이러한 자원의 위치 및 이용에 있어서 지역 또는 전통지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구자.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연구자는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 참여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여전히 생물자원의 잠재성을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대학이나 연구소에 속한 지역 인사이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조사현장으로 삼는 해외 출신일 수도 있다. 국내 및 국외 연구자에게는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며, 참여하는 활동에 따라서도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 자원이 발견된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이는 농부 개인, 공동체,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방방위군과 같은 정부기관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등의 준국가기관이 될 수 있다.
- 조사 대상 자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춘 전통지식 보유자. 이러한 지식이 이미 서적이거나 저널을 통해 공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원천지식의 보유자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상용화 단계에 따라 특정 종의 수확업자나 생산업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복합기업집단(complex conglomeration of companies). 해외 거대다국적기업부터 지역적·개인소유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특히 제약 및 생명공학기

업부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성식품, 한방업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 집단. 이들은 가공, 마케팅, 재판매 또는 소매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제품을 저장, 운반, 가공 및 포장하거나 기타 목적지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법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예를 들어 환경부(DEA)는 생물탐사 허가증의 발급 과정에 관여 하며, 주정부 부처는 수집 및 연구목적 수출 허가증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관련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공공의 요구를 반영한 주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비정부기구(NGOs)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I-4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문서는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DEA에서 제작한 일련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어느 부분도 생물다양성 법 및 BABS 규정에 명시된 이해당사자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이 가이드라인이 의도하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착생물자원 그리고/또는 전통지식의 **제공자**(예. 토착지역공동체, 전통 치유사, 현지의 컬렉션 소유자, 연방정부 기관 그리고 개인, 공공 및 공동 토지 소유자)
-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자**(예.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기업, 생물탐사자 및 연구자)
- BABS 규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국가 및 주정부 부처(이하, '**규제당국**')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생물탐사, ABS 및 관련 BABS 규정에 대한 NEMBA 제6장의 법적 요건 및 권리를 다양한 그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ABS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개념에 대한 인식 증진
- 물질이전 및 이익공유계약의 협상, 체결 및 평가와 관련된 지침 제공
-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효율적 접근 및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1-5 가이드라인의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ABS 개념 소개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어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제 및 정책적 체계 설명
- 생물탐사 허가증 신청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 관련된 다양한 그룹에 대한 설명
- 가이드라인의 배경 및 목적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어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가이드라인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 문서는 다음의 세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I.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II.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III.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 2

## 제공자

토착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2

## 제공자

### 2-1 서론

이 부분에서는 생물탐사를 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을 제공하는 자 및 생물탐사에 이용될 수 있는 전통적인 이용이나 지식을 보유한 토착 지역공동체나 개인을 위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제공자는 토착생물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자, 그 물질 자체를 제공하는 자,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적인 이용이나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모두 속하는 자로 분류된다.

### 2-2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제공자

#### 법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공자

**토착생물자원 제공자:** 토착생물자원 제공자는 토착생물자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기업, 토지소유자, 연방정부기관 또는 토착공동체를 포함할 수 있다.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권리는 자원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해당 자원이 자라거나 발견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공동체, 개인 토지소유자, 공공 토지소유자(예. 교통부 등 연방정부 부처, 지방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공원

(SANParks), 주정부 보호구역), 식물원, 현지외 컬렉션 소유자(예. 박물관, 대학, 유전자 은행, 식물 표본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을 통한 타 국가가 제공자에 포함된다.

**전통지식 제공자:** 대부분의 경우 토착공동체가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생물다양성법은 개인도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3 발견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

생물탐사의 각 단계에 따라 이익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와 상업화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발견 단계는 과학자가 토착생물자원이 상품으로 추가 개발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상업화 단계는 토착생물자원의 상업화 잠재성이 이미 파악된 단계이다. 상업화 가능성이 아직 포착되지 않은 발견 단계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할지 가능하리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제공자는 추후 협상할 이익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조건 하에 전통지식 그리고/또는 토착생물자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2-4 토착생물자원 및 지식에 대한 접근

#### 이용자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이유

토착생물자원은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재료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기능성 식품), 생약식품보조제 또는 염료 및 기타 화학물질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토착생물자원은 약용 성분 또는 기타 성질에 인하여 이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품이 출시되기 전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질을 분리하고 안정성 및 효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제공자가 소유한 토지에는 생물탐사에 있어 흥미로운 토착생물자원이 존재할 수 있다. 제공자는 본인 소유 토지에 속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공자의 사전통보승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제공자의 토지에 접근할 수 없다. 이는 토지에 접근하여 그 토지에 속한 자원을 수집하기를 바라는 자는 먼저 제공자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해당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제공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생물탐사자에게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수집된 자원이 생물탐사에 이용되면, 생물탐사자는 발생될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익공유에는 예를 들어 수수료 또는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참조).

### 이용자가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이유

자연환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품종의 동식물 및 기타 생물이 존재하지만, 모든 생물이 약용 성분이나 기타 유용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품종의 생물자원 중에서 유용한 자원과 그 성질을 찾아내는 일은 종종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다수의 토착공동체는 해당 지역생태계 내의 동식물에 대한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의약품 및 식품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자원에 대한 고유한 지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지식은 생물탐사자에게 막대한 가치를 줄 수도 있으며, 유용한 식물 및 자원을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전통지식 보유자는 외부인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지식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전통지식 보유자는 해당 지식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만약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지식공유 및 그 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전통지식 보유자는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 받을 권리가 있다(별첨 3 참조).

- 공동체의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에 기반을 둔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공동체의 총유로 한다.
- 공동체는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BABS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토착공동체가 채택한 결의안(별첨 4 참조)에 의한 승인이 있을 때에만 해당 승인이 진정한 승인이라고 인정된다.

- 공동체의 대표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공동체는 생물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 공동체는 계약 체결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토착공동체는 의사결정을 위한 전통적인 또는 관습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 2-5 공동소유의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

자원 및 지식이 공동소유일 경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공동소유의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체의 승인을 받은 공동체의 공인된 대표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한다.
- 공동체는 승인 전에 생물탐사자로부터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목적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설명 6 공개된 전통지식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하의 전통지식은 토착생물자원의 발견 또는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토착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자도 책, 기사, 언론 또는 공동체 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해당 지식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다. 지식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토착공동체가 전통지식에 대해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해당 지식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전통지식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한다는 사실이 해당 지식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토착공동체가 더 이상 그 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반대로, 생물탐사를 위해 전통지식이 이용된다면 그 지식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토착공동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때때로 전통지식이 여러 토착공동체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해당 지식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특정 공동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지식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 생물탐사를 위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해 어느 공동체에서 승인을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에서는 동일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생물탐사자에게 승인을 제공할 수 있는 토착공동체가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통지식을 공유한 별개의 토착공동체가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승인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San)족과 나마>Nama)족이 후디아(Hoodia) 및 스킨레티움(Sceletium)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협력했다.



Portulacaria afra (spekboom) 사진 제공: Anthony Mills

## 2-6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의 개시

아래 순서도는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제공자를 위한 ABS 절차를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다. 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그 지식의 유일한 보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지식을 보유한 다른 토착공동체가 이익공유계약에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림 2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순서도



### 설명 7 승인 전 잠재적 이용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질문

- 연구자는 누구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소속 업체/기관은 어디입니까? 해당 업체/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의 지를 증명할 수 있는 명함이나 공식서류가 있습니까?
- 연구하고자 하는 토착생물자원은 무엇입니까? 해당 자원에 대한 학명(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이용하고자 하는 전통지식은 무엇입니까?
-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국제적기업/연구자의 경우, 연구가 수행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연구에 참여하는 지역 또는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 해당 자원 연구에 참여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 연구예산은 얼마입니까?
- 어떤 유형의 상업적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원 또는 전통지식으로부터 기대하는 이익이 있습니까? 연구 또는 상업화로 인한 기타 이익이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을 고용할 예정입니까?
- 해당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할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해당 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언제부터 제공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원에 대한 접근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원하며, 자원을 얼마나 수집하려고 합니까? 해당 자원을 수집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원을 수집하거나 수확하는 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 해당 자원의 수확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있습니까? 자원의 수확이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합니까?
- 공동체가 제공하는 전통지식에 대한 기밀유지를 어떻게 보장할 예정입니까?
- 연구개발 진척사항에 대해 어떻게 고지할 예정입니까?
-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가급적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담당자 선호)는 누구입니까?

#### 물질이전계약이 필요한 경우와 이익공유계약이 필요한 경우

1. 생물탐사자가 토착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이익공유계약 없이 물질이전계약만을 체결하지 않는다.
2. 생물탐사목적으로 전통지식과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받은 생물탐사자는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모두를 체결하여야 한다.
3. 생물탐사자가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예, 본인의 소유지에

자원이 있는 경우) 토착지식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약정이나 계약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생물탐사 허가는 필요하다.

4. 생물탐사목적으로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토착공동체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익공유계약만을 체결하면 되고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설명 8 비공개계약

비공개계약은 적어도 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또는 비밀준수계약으로도 지칭하는 법적 계약이다. 이 계약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와 공유하지만 제3자에게는 접근을 금지하고 싶은 비밀정보(전통지식 등)를 명시하고 있다. 즉 비공개계약이라 함은 해당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계약에 기타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 2-7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협상에 필요한 정보

### 물질이전계약

생물탐사자가 프로젝트의 상업화 단계에서 제공자의 토지에 있는 토착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발공당국에 물질이전계약이 전제된 생물탐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이전계약에서 제공자는 토착생물자원의 제공자이며, 생물탐사자는 해당 자원의 이용자로서 서명해야 한다(BABS 규정 부속서 7 참조). 설명 9는 물질이전계약 체결 전 토착생물자원의 제공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생물탐사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함께 생물탐사자는 토착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는 타 연구소 또는 제품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 생물탐사자가 제공자로서 제3자로의 이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물질이전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제3자로의 물질이전에는 장관의 서면승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제공자가 생물탐사자에게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공자는 허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생물탐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단, 제공자는 생물탐사자에게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

- 성명, 식별번호 및 연락처
- 물질이전계약의 서명인으로서 대표하는 대상
- 토착생물자원의 접근에 대한 공동체 결의안
- 생물탐사자가 의도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의 현 이용 상태. 여기에는 생물탐사자에게 제공자의 전통지식 일부를 전달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이용은 생물탐사자와 체결한 이익공유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명 9** 물질이전계약 그리고/또는 이익공유계약에 필요한 정보

- 기관이나 연구소 명칭 및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기관 연락처
- 신분증명서 인증사본 및 기관에서의 직함을 포함한 기관 담당자 성명
- 생물탐사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및 신분증명서
- 토착생물자원 수령자가 생물탐사자가 아닌 다른 자인 경우, 수령자 연락처
- 생물탐사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의 종류, 수량 및 출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예상되는 연구기간
-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는 경우 그 수출목적
- 토착생물자원의 이용목적

**이익공유계약**

제공자가 토착생물자원 그리고/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생물탐사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제공자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 필요한 정보는 물질이전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일부 일치한다(설명9 참조).

만약 제공자가 생물탐사자에게 토착생물자원 그리고/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공자는 허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생물탐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단, 제공자는 생물탐사자에게 토착생물자원 그리고/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공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리고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직함
- 제공자가 토착생물자원을 공유하는 것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제공자는 물질이전계약의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위 참고)
- 제공자가 생물탐사자와 전통지식의 공유 및 이익공유계약 체결에 동의한다면, 그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지식 및 전통적인 이용을 공유해야 한다.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에 포함된 정보는 생물탐사자, DEA 뿐만 아니라 DEA가 지정한 생물탐사 허가 분석 담당 자문위원회와도 함께 공유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생물탐사자에게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전통지식을 공유하는 토착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계약 협상 시 필요한 공동체 대표자의 성명, 지위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토착공동체는 협약에 명시된 대표자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해당 결의안은 공동체가 생물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이익공유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별첨4 참조).
- 이익공유계약의 내용으로서 제공자가 수령하고자 하는 이익의 유형에 대해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별첨3 예시 참조)..
- 제공자는 필요할 경우 이익공유계약을 수정하기 위하여 협약이 얼마나 자주 검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협의해야 한다. 검토 한 달 전 이용자는 생물탐사에 대한 주요 신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공자는 검토 전 미리 해당 정보를 숙지할 수 있다.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독점 계약), 한 명의 생물탐사자와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생물탐사자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다면, 생물탐사자와의 계약 내용에 반드시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설명 10 물질이전계약 또는 이익공유계약 협상 전 잠재적 이용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질문

이익공유 계약을 협상 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기대이익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연구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 연구의 기대결과는 무엇입니까? 목표하고 있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성과 달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 프로젝트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신청을 할 예정입니까?
- 생물탐사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이익의 달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 최종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까? 아니면 연구결과를 제3자나 타 기업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 연구개발 진척사항에 대해 어떻게 고지할 예정입니까? 얼마나 자주 계약을 재검토 할 예정입니까?

## 2-8 기대이익의 유형

이익공유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유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제공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이익공유 유형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익의 유형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으로 구분되어 있다. 별첨 3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고 또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익공유 유형 이외에도, 지역 협력자, 보조원, 가이드 및 정보원을 연구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참가자로 포함하거나, 관련된 과학적·법적·관리적 사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유전자원 등의 연구과정에서 제공자 역시 적절한 인정을 받고, 사진, 슬라이드 및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공받는 점을 보장하고자 할 수도 있다.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목적 및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된 단순화된 의사소통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설명 11 다양한 이익 유형에 따른 장단점

이용자와의 협상에서 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익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이익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이익에 대해 함께 협상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이익이 제공자에게 가장 적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이익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 위험성이 그만큼 높고 금액 수령 시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통해 발생하는 로열티는 생물탐사가 시장성이 높은 제품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향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가 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약과 같은 일부 제품은 타 의약품처럼 수익성이 좋진 않지만 리스크가 낮을 수 있다. 선불이나 단계별 지급도 이익공유 유형으로서 협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은 좀 더 즉각적이고 예측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수익은 절감될 수 있다.

비금전적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공자가 공동체나 단체일 경우 전체 그룹에 유익한 비금전적 유형이 좀 더 적절한 이익공유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의 비금전적 기여가 될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이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자를 도울 수 있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사례별로 다르다. 하지만 협상에 돌입하기 전에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이익의 유형이 무엇일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제공자는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별첨 3은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을 단/중/장기별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 2-9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체결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은 토착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생물탐사자와 이러한 자원이나 지식의 제공자가 체결하는 법적구속력을 지닌 계약서이다. 계약은 두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정이다. 모든 계약서에는 두 당사자 모두 합의하고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BABS 규정 부속서 7 및 부속서 8에는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의 표준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부속서에 계약종료, 정보 비밀유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계약 위반)를 다루는 추가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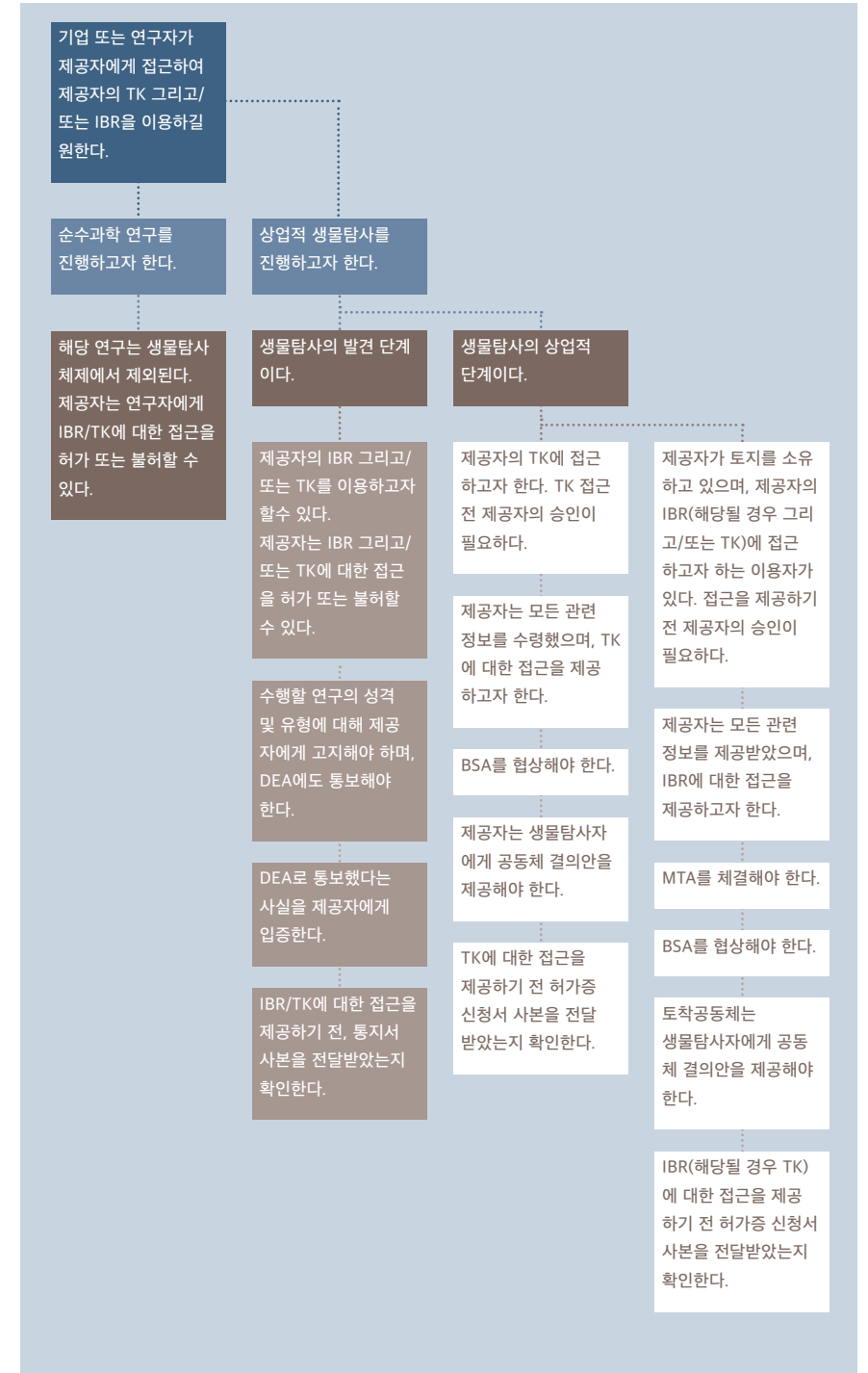
## 1. 금전적 이익 수령

생물다양성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자금이 납부되는 생물탐사 신탁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환경부의 국장이 이 신탁기금 관리를 주관한다. 기금에서 수령한 자금은 이익공유계약에서 금전적 이익의 지급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전통지식 그리고/또는 토착생물자원의 제공자에게 매년 지급될 것이다. 이는 생물탐사자가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계약 이행

계약서에 계약 관련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을 통해서만 계약 위반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가 이견을 좁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개인(Mediator)에게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개가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재자(Arbitration)에게 해당 사안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중개 및 중재를 허용하는 계약은 추가로 중개인 및 중재자를 지정하는 방법과 계약당사자가 중개인 및 중재자로 지정된 자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은 소송, 중개 또는 중재 비용의 부담주체의 대해 명시해야 한다. 계약위반 발생 시, 제공자는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다(설명 13 참조).

그림 3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개요



## 설명 12 공동체 규약

BABS 규정 부속서 8의 이익공유계약 표준양식은 토착공동체가 생물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으며, 이익공유계약 체결에 동의하였고, 대표자에게 공동체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명시한 토착공동체의 결의안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공동체 결의안이 당면한 생물탐사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반면, 부시버크리지 전통치유사(Bushbuckridge Traditional Health Practitioners)와 같은 일부 토착공동체는 현장 역할을 하는 '공동체 규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규약은 토착공동체의 가치, 관습법 및 규범, 전통지식과의 관계와 리더십 구조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공동체 규약'은 공동체의 광범위한 협의의 결과로 도출된 토착공동체가 개발한 인터페이스 문서(interface document)로 정부 및 잠재적 생물탐사자에게 공동체 참여 및 공동체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규약'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가치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공동체 규약은 BABS 규정 부속서 8에서 요구하는 공동체 결의안이 임시방편이 아닌 적절한 공동체 절차를 기반으로 한 결정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그 규약은 정부로 하여금 공동체 결의안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을 제공하며, 잠재적 생물탐사자가 토착공동체를 참여시킬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규약은 법률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구이다.

## 2-10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협상에 대한 지원

###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 협상 시 대등한 관계 보장



고(古) 빗멘 피엣, 후디아 이용법 시범  
사진 제공: Rachel Wymberg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토착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이 공정하고 공평함을 보장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정부는 계약에 대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입하기도 하고, 토착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제공자는 정부에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설명 13 참조).

## 설명 13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나?

DEA는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허가증 신청자(예, 생물탐사자)와 제공자 간 협상 촉진
- 전통지식 그리고/또한 획득한 토착생물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용자 주장의 입증 조력
-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개인 역할 담당

DEA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허가증 취득자(예, 이익공유계약 및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하에 허가증을 취득한 생물탐사자)의 의무준수에 대한 감시
- 당사자 간 체결된 이익공유계약을 법적 문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제공
- 생물탐사자의 이익공유계약 그리고/또는 물질이전계약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 집행
- 토착생물자원을 불법 수집한 생물탐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

## 2-11 계약의 후속조치

BABS 규정 부속서 8의 이익공유계약에서는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허용하고 있다. 이익공유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재검토의 이행 시기 및 빈도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익공유계약에는 생물탐사자가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제공자에게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진척상황 및 관련 이익의 현황에 대해 얼마나 자주 보고할 것인지 그 주기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생물탐사자가 현황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방법과 그 장소 및 매체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필요 시, 제공자는 보고서의 번역본 및 개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생물탐사자는 제공자가 사전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 한 달 전 주요한 신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자는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를 검토하고 그 영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전문가를 임명하고자 할 수 있다.

# 3

## 이용자

토착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 3

## 이용자

### 3-1 서론

이 가이드라인은 토착생물자원 및 그 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에는 상업적 잠재성을 위한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 탐사에 참여한 연구자, 상업적 응용과 관련 없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토착생물자원 거래 또는 가공 기업이나 활발한 생물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소가 포함될 수 있다. 설명 14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BABS 규정은 수행하는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이용자에게 다르게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건조종인 *Harpagophytum procumbens* 사진 제공: Ulrich Feiter

### 설명 14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다양한 이용자

- 인증된 국가 3차 기관 또는 연구소 소속 연구자
- 토착생물자원 수출업자/거래업자
- 다국적 기업
- 국내/국외 가공업자 및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해외 연구자

### 3-2 이용자 활동 및 관련 허가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입법체계에서는 특정 생물자원 및 활동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7 페이지 설명 5 참조), 설명 5에 열거된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당 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의 성격이 변경된다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각기 다른 연구 및 상업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비상업적 기초 연구

**저는 상업적 의도 없이 순수과학 연구를 위하여 토착생물자원을 수집하고자 하는 연구자입니다**

비상업적 연구를 위해 해당 주당국으로부터 수집 그리고/또한 연구 허가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당국에 생물탐사 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물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그 물질이 박물관, 식물 표본실, 유전자 은행이나 등록된 미생물 수장기관 등 현지의 컬렉션에 속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이 변경되면, 다른 허가증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에는 생물탐사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진 제공: DEA

**설명 15**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 - 버빗원숭이에 대한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대학과 미국 소재 대학 두 곳에서 버빗원숭이(*Chlorocebus aethiops*)의 유전적 다형성을 연구하기 위한 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게놈지도를 완성하고 해당 종을 비인간 영장류의 연구 모델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순수학술연구에 속하지만, 국제연구소의 자금지원협약에 따라 연구대상의 유전물질이 타 연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버빗원숭이를 자연 숙주로 삼는 시미안 면역결핍 바이러스(SIV)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있다. 버빗원숭이의 40-60%는 SIV에 감염되어 있지만, HIV에 감염된 인간처럼 AIDS가 유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설명된다면 HIV/AIDS 치료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 버빗원숭이의 유전물질 수출을 규제하고 타 연구소(제3자)에 그 유전물질이 전달되었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생물탐사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연구자는 주당국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익에는 종 분류 및 유전적 형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종의 유전적 무결성 보호에 기여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그 이외의 이익에는 대학원 및 산업계 참여를 통한 연구협업, 연구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공유, 연구 결과에 접근 제공자의 참여 인정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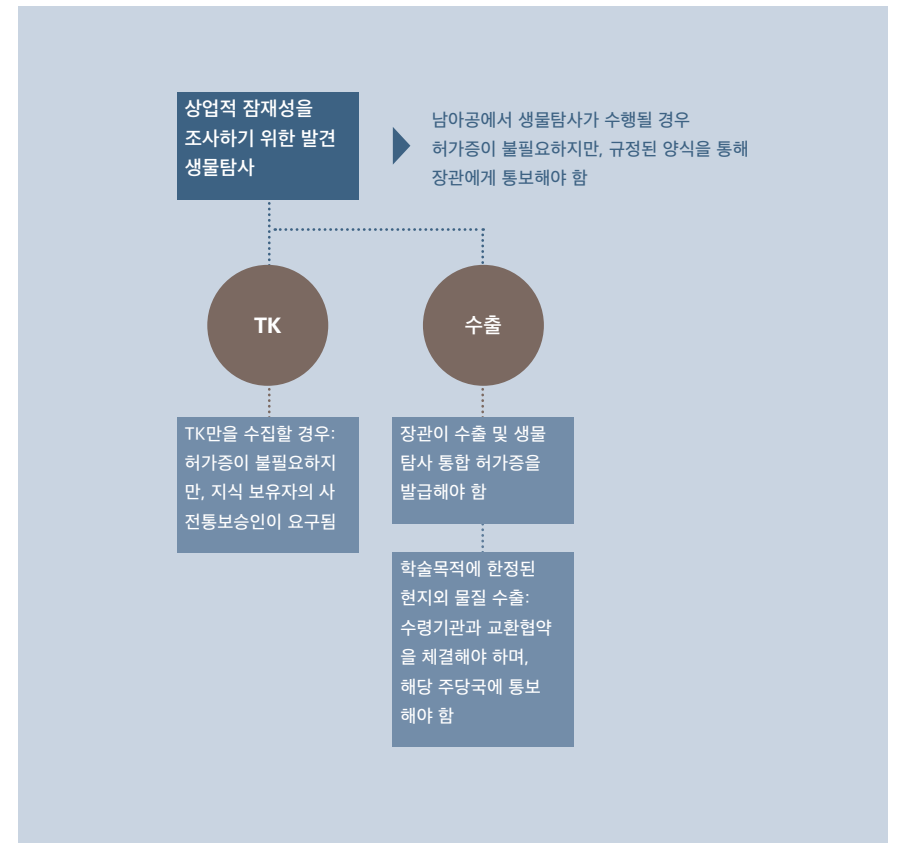
*Portulacaria afra* (spekboom) 사진 제공: Anthony Mills

**상업적 잠재성 조사를 위한 발견 연구**

저는 검사/발견을 위해 다양한 토착생물자원을 수집하거나 상업적 잠재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입니다.

발견 단계에서는 허가증이 필요 없지만 통보 절차는 이루어져야 한다. 수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상업적 목적을 위한 토착생물자원 연구 수행의 목적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으로부터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림 4** 발견 생물탐사 및 토착생물자원 수출



설명 16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 -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Sceletium tortuosum*, 칸나) 상업화



*Sceletium tortuosum*



수확한 식물을 세정하기



유통전 스킨레티움 가루

칸나(kanna) 또는 쿠고에드(kougoed)로 잘 알려진 스킨레티움 토르투오숨(*Sceletium tortuosum*)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케이프, 동케이프 및 북케이프 지방에 서식하는 고유종으로서 낮게 자라는 소규모 속의 다육관목이다. 산(San)족과 코이(Khoi)족은 오래 전부터 기분전환용으로 이 식물을 사용해 왔으며, 1662년의 기록이 이 식물의 이용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1990년대 나마랄랜드(Namaqualand)의 폴숙(Paulshoek)과 뉴리비에(Nourivier) 공동체에서 칸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마(Nama) 출신인 공동체 주민들은 해당 식물에 대한 지식을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산족이 이러한 이용에 대한 주된 지식보유자로 간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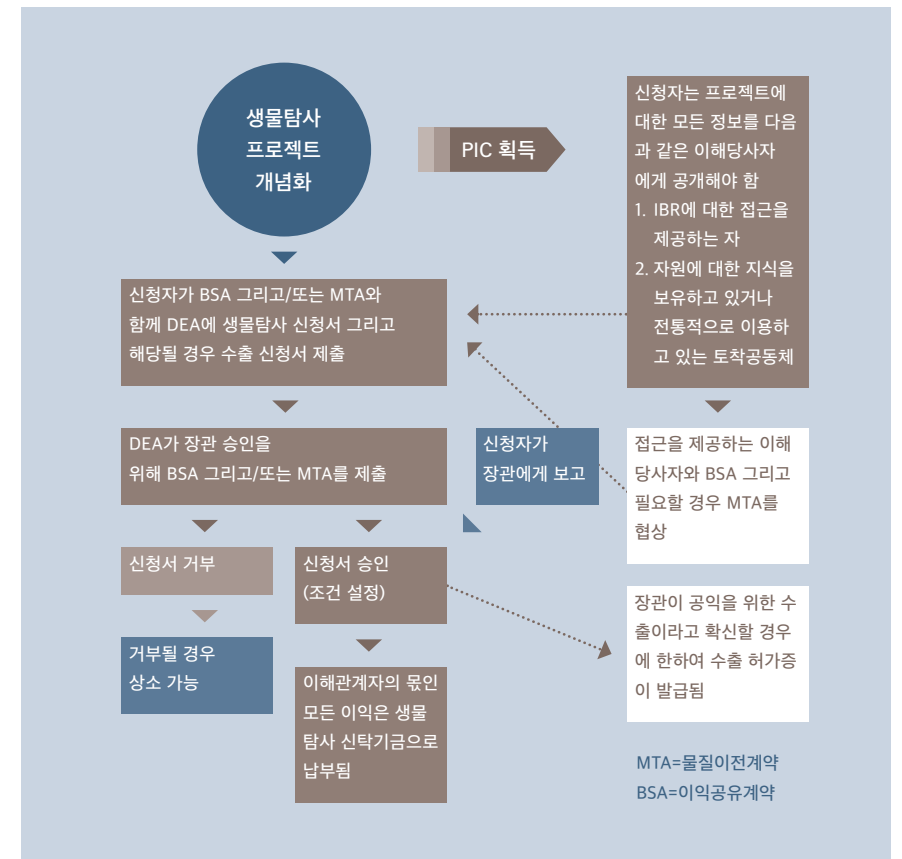
지역업체와 폴숙 및 뉴리비에 공동체를 포함하기 위하여 선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산족위원회(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족 대표) 간 이익공유계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에 따르면, 3년 간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산족위원회의 제품인증로고 개발을 위한 일시금과 로고의 독점이용권을 위한 1% 금액 지급이 포함되었다. 산족위원회는 경쟁제품이 아닌 기타 제품에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DEA의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이 2010년 10월에 최초로 발급되었다. 해당 제품은 개발 후 최초로 미국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

저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용을 위하여 특정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거나) 해당 자원을 개발 또는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신청을 하거나, 임상연구를 시작하거나, 특정 자원을 배양하고자 할 수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거래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DEA의 생물탐사 허가증이 필요하다. 허가증 신청양식은 BABS 규정 부속서 2 제1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관이 해당 물질이전계약(BABS 규정 부속서 7) 및 이익공유계약(BABS 규정 부속서 8)을 승인했을 경우에 한하여 생물탐사 허가증이 발급된다. 해당 주당국에서 수집 또는 수확 허가증도 함께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림 5 상업적 생물탐사를 위한 일반 신청절차





알로에(Aloe ferox) 수액 응고하기 사진 제공: Ulrich Feiter

### 토착생물자원의 수출

저는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나 상업화 단계에서 허가증이 필요하다. 만약, 발견 단계의 연구나 상업화를 위하여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장관이 발급한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이 필요하다. 해당 허가증의 신청양식은 BABS 규정 부속서 2 제2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당국의 주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 이하 MEC)이 발급한 수출 허가증이 필요하다. 해당 허가증의 신청양식은 BABS 규정 부속서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3 허가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 생물탐사 및 수출 허가증 신청 비용은 얼마입니까?

BABS 규정 부속서 1은 환불이 불가능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생물탐사 허가증은 5000 랜드(Rand),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은

5200 랜드,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증은 100 랜드이다. 입금 계좌정보는 DEA 웹사이트의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DEA에 요청할 수도 있다.

#### •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려면 생물탐사 허가증과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을 둘 다 신청하고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다. 생물탐사 허가증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생물탐사에 요구된다.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이 필요하다. 신청하는 허가증에 따른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 허가증 신청 수수료는 DEA에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수수료 지불 전에 우선 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참조번호를 받는 것이 좋다. 환불이 불가능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는 허가증 신청서가 처리될 수 없으므로, 수수료 지불 후 지불증빙을 DEA로 보내야 한다.

#### • 2개 이상의 토착생물종을 조사하려 합니다. 종별로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동일한 신청서에 2개 이상의 종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그룹과 해외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업 중입니다. 각자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동 신청이 가능합니까?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발견 단계에서 통보 시, 협력자 전원을 나열해야 하며 그 중 1인이 프로젝트 리더로 간주될 수 있다.

해외 당사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트너와 함께 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 자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측의 자원 활용 용도를 밝혀야 하나요?

그렇다. 자원이 신제품 개발에 쓰일 경우, 이는 생물탐사로 간주되며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이 필요하다.

#### • 우리 회사는 물질을 병에 포장하고 있지만 그 외의 공급과정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단순히 병에 담은 작업일 경우, 생물탐사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 • 우리 회사는 토착생물자원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BABS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그렇다. 생물탐사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허가증 신청서 보충서류로 물질이전계약

서 및 이익공유계약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장관이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여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토착생물물질의 후속 이용자/구매자가 있다면 그들과는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에 발생하는 이익은 최소한 원재료에 대한 선급금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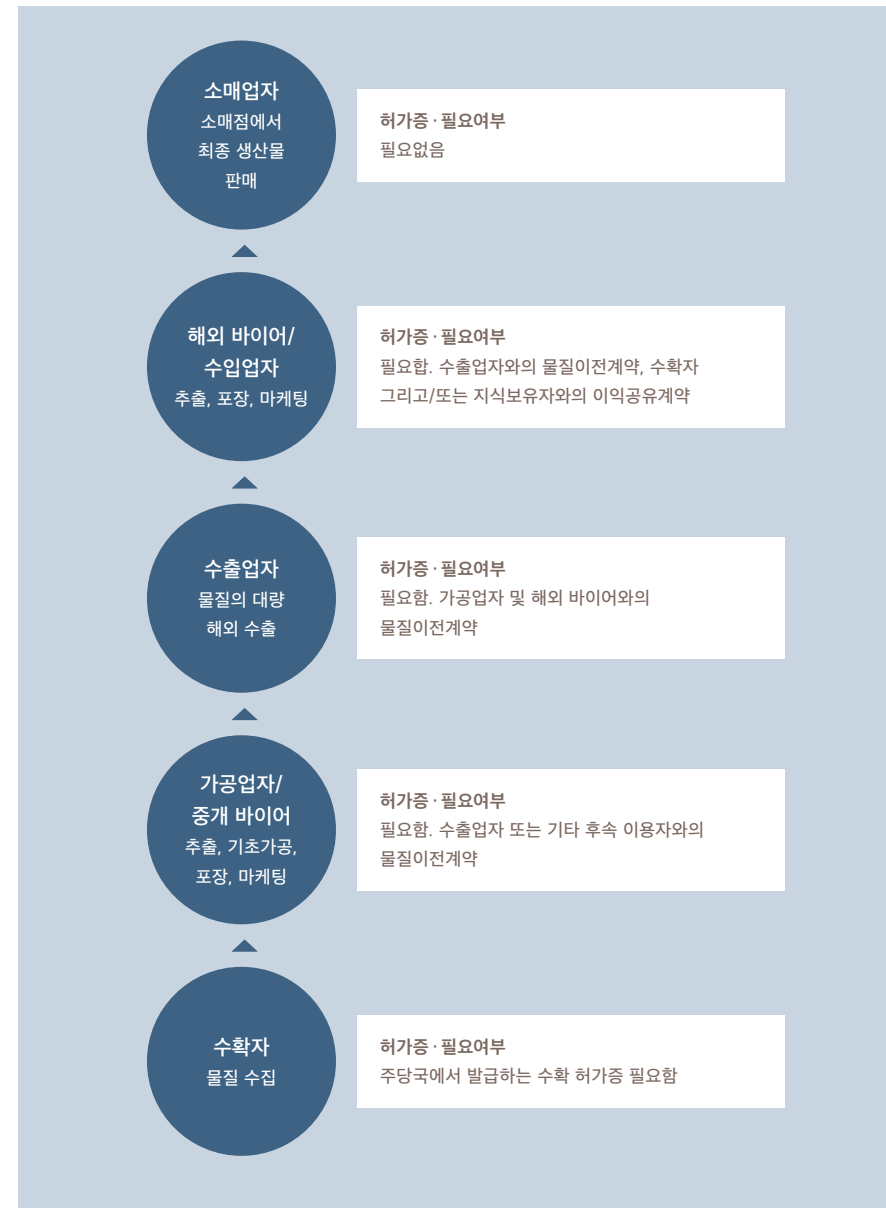
• 토착생물자원의 표본만을 수출하려 합니다. 어떤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현지의 컬렉션으로부터 표본 수출 시, 단순히 주당국에 수출 사실을 신고하고 수령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우리 회사는 회사는 토착생물자원으로 음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생물탐사 허가증 신청이 필요합니까?

원재료의 원형 거래(예, 루이보스)는 생물탐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원이 추출물 형태로 다른 제품에 포함되어 사용된다면 생물탐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토착생물자원이 음료의 향신료(예, 마룰라 추출물을 가미한 술)나 루이보스 차 추출물을 가미한 탄산음료, 과일주스, 시리얼 또는 죽에 사용된다면 생물탐사 허가증이 필요하다.

그림 6 가치사슬의 단계별 허가증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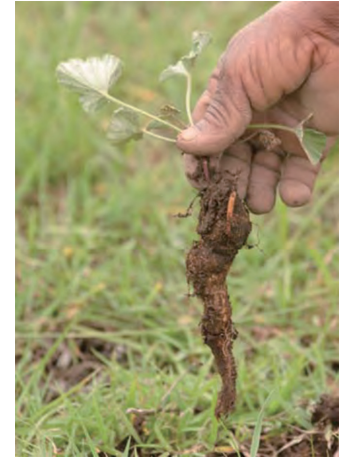
### 3-4 자원 유형 및 수집 절차

각종 자원은 서로 다른 법과 절차에 의해 규제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자원에 적용되는 절차와 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자원수집 절차의 주요사항		
자원	수집 관련 요구절차	관련법
비토착생물자원	생물탐사 허가증 필요 없음. 수출의 경우, 식물 위생 요건이 적용된다. 식물위생 허가증은 농림 수산부(DAFF)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
해양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법(MLRA)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을 규제한다. 수집 전 DEA의 해양 및 연안과(O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MLRA, 생물다양성법, BABS 규정
보호종	위협 또는 보호종 규제(TOPS)상 대상 종의 지위를 확인한 후 해당 요건을 준수한다	생물다양성법, TOPS, 주 법률
CITES종	CITES종의 수출업자는 토착생물자원의 수출 절차를 따르고, 자원의 발견 위치에 따라 주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보전담당 부처에 CITES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법: CITES 규제 R173
ITPGRFA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유전자원	토착농업자원은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제에 따라 허가증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법, BABS 규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현지 외 토착생물자원. 예. 유전자 은행, 컬처 컬렉션, 식물원, 식물 표본실 및 박물관	주당국 통보용으로 수출 및 연구 계약서를 제출한다.	생물다양성법, BABS 규정

### 설명 17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 -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확인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에서 호흡기 감염, 감기 및 독감에 널리 사용되는 식물종이다(독일어로 'Umckaloabo'). 흉부 감염 외에도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DEA는 국제기업과 그 제휴사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약회사로부터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이용에 대한 생물탐사 허가증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허가증 신청자 측은 부족 토지에서 수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 코사족 왕족 및 지역공동체와 이익공유계약을 협상하였다.



*Pelargonium sidoides*의 뿌리 사진 제공: Ulrich Feiter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의 이용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식 소유권에 대한 공동체 간의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DEA는 이스턴케이프주(Eastern Cape) 경제개발환경부와 협력하여 이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야생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집단과 해당 종의 재생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전이 위태로울 정도로 종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 및 위험 평가가 법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원 관리와 종에 대한 위험은 생물다양성 관리계획(BMP)에서 다루고 있다. SANBI와 NGO인 TRAFFIC이 함께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의 BMP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BMP는 2011년 중순 완료되었으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sup>1)</sup>

### 3-5 전통지식 관련 작업

전통지식 문제를 다루거나 전통지식 보유자와 협업하는 연구자는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연구자는 전통지식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전통지식 보유자가

1) 정부관보 제34487호(2011. 7. 29).

흔히 가지게 되는 우려를 인지하여 세심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이는 비상업적 의도로 기초 연구를 하거나, 상업적 응용 사실을 표명한 경우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가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속했다고 해서 해당 지식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식 보유자로부터의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연구자는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한다(3-7장 참조).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먼저 윤리적 승인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구의 출판을 계획 중이며, 특히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 받은 지식을 공개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내용을 특허 출원하고자 할 때는 필수적으로 전통지식 보유자의 사전통보승인을 얻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민족생물학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Ethnobiology)는 전통지식 보유자와 협력하는 이들을 위한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상업적 의도 없이 순수 연구를 위하여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얻고자 하는 연구자입니다.**

허가증은 필요 없으나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연구에 대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저는 잠재적인 상업적 응용을 위하여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얻고자 하는 연구자입니다.**

허가증은 필요 없으나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연구에 대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이익공유계약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러한 초기 단계에도 연구가 공동체 또는 지식 보유자에게 유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적일 필요는 없다. 별첨 3에 고려할 수 있는 유형이 나열되어 있다.

**저는 새로운 상업적 응용을 위한 주요 소재로서 전통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승인을 얻은 후 공식적인 이익공유계약을 협상해야 한다. 아래의 3-6장에서는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에 대해 알아본다.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3-8장에서 협상 및 이익공유계약 체결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3-6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식의 잠재적 보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DEA에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장 연구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또는 출판물이나 기록물의 검토도 포함될 수 있다.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 계획 시 원천 지식 보유자 전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론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나서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생물종과 성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상 연구의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이를 논할 수 있는 관련 정보원/지식 보유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지역 NGO도 전통지식 보유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지식을 제공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공동체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지식 보유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공동체가 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동체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 적법한 지식 보유자를 찾아내기 힘들거나 다수의 공동체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협상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DEA에 지원과 조언을 청해야 한다. DEA는 이러한 상황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생물탐사 허가증 신청서 처리 시 이를 감안할 것이다.

**전통지식 보유자를 파악한 후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연구 참여를 위해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취득
- 생물탐사가 상업화 단계일 경우, 이익공유계약의 협상 및 체결

### 3-7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 사전통보승인은 무엇이며 어떤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까?**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기 전에, 생물다양성 또는 전통지식 보유자로부터의 사전통보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자원의 이용목적, 수집 방법, 연구의 기대효과를 반드시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지식 보유자가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 언어를 사

용하거나 통역사를 대동하여야 한다. 사전통보승인은 반드시 지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통지식 보유자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거절 그리고/또는 지식 이용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 • 장기간에 걸친 신뢰 구축

승인 취득은 빠르고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진행된다. 이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종종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사전통보승인의 원칙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으나, 사례별로 상황은 달라진다. 당사자 전원은 기꺼이 상황에 적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복잡하고 어려운 승인과정에 접근해야 한다.

“상호이익을 다루고 그 조건에 대한 합의와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경우, [토착민과의] 접촉은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메이슨 듀리(Mason Durie), 토착 마오리족 출신 뉴질랜드 마세이대학(Massey University) 부총장보]

#### • 사전통보승인 절차상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관은 허가증을 발부하기 전 신청자가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쓴 편지, 회의록이나 회의 녹취자료 또는 연구내용 및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팸플릿 등을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전통지식 보유자와의 의사소통은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적절한 언어로 진행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 제공자에게 반드시 요청할 사항은 무엇이며 사전통보승인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토착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에 대한 증빙은 서한 또는 결의안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결의안 예시는 별첨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공자에게는 대표자의 성명, 지위 및 자세한 연락처 정보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 • 사전통보승인을 위해 접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적 토지소유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토지소유자가 정부일 경우에는 관련 부처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토착공동체로부터 자원 그리고/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구할 때, 사전통보승인은 공동체가 선출한 대표자의 책임이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며 각기 다른 형태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러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사전통보승인을 얻기 위해 서두르다 부적절한 기관에 연락하는 것보다 먼저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독립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지만 결국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며 향후 문제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 • 사전통보승인 절차가 유효한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전통보승인은 신뢰구축 및 관계발전 과정의 일부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공동체들은 상당히 복잡하며, 관습적 및 법적 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공동체 내 적절한 사람들과 협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의 NGO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생물탐사 전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Johanna von Braun



### 3-8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의 협상 및 체결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제공을 위한 승인 취득 후,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정된 전통지식 기반 생물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이익공유계약을 협상해야 한다. 장관은 생물탐사 허가증을 발부하기 전에 이익공유계약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DE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전계약은 허가증 신청자와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약정이다. 이익공유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물질이전계약과 동일하지만 생물탐사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익공유계약이 때때로 독립적인데 반해(예를 들어, 자원에 대한 접근이 아닌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만이 필요할 경우), 물질이전계약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익공유계약을 수반한다.

#### •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요소는 무엇입니까?

적법한 당사자들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익공유계약은 공동체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공동체가 생물탐사 프로젝트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시행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수반해야 한다. 이익공유계약의 당사자 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BABS 규정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계약 종료 조건, 제공된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재판 또는 중재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정한 주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간단하고 비기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제공자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계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계약에 대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정함은 절차상의 공정함을, 공평함은 결과상의 공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괄적인 협의와 투명한 협상을 통하여 개발되고 정보의 전면공개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 이익공유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하여 이익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 혹은 수집하는 물질의 양이 허가증에 명기된 것과는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와 같은 경우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존의 이익공유계약이 수정되어야 함을 요청해야 한다. 허가증에 관한 기타 변경사항은 허가증의 성격, 발급당국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의 경우, 허가증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장관이 이익공유계약에 대한 수정을 승인할 수도 있다.

#### •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해당사자가 파악되었으나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DEA는 이러한 협상 과정이 촉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DEA는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익공유계약 상의 비밀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여 논평을 수렴할 수 있다.

#### • 허가증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처리기간은 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정보에 따라 다르다. 허가증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발급당국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발급당국에서 의문사항이 없을 경우, 4개월 내에 허가증이 발급된다.

#### • 허가증 신청서를 DEA에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 허가증 신청서 접수 시 참조번호가 발급되며, 신청자에게 참조번호를 통지하기 위하여 정식 접수확인 서한이 발송된다. 이 서한은 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DEA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나열한다.
2. 신청자는 허가증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DEA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최종 허가증 신청서는 국립생물탐사자문위원회(National Bioprospecting Advisory Committee)에 제출되고 위원회는 발급당국을 도와 이익공유계약 및 생물탐사 허가증 신청서를 평가한다.
3. 자문위원회의 평가 후, 허가증 신청서는 추가적인 명확성 및 정보의 보안을 위해 신청자에게 반송되거나 최종결정을 위해 장관에게 전달된다.
4. 장관은 이익공유계약 및 물질이전계약을 승인하여 허가증 발급을 지시하거나 신청서를 거부한다.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DEA 국장이 생물탐사 허가증을 발급한다. 거부될 경우, 상소 기회가 주어진다.

#### • 계약이 공개될 경우, 비밀로 간주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BABS 규정도 '비밀정보'에 대한 정의(규제당국 가이드라인 참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비밀유지를 규제하는 주요 법은 정보접근촉진법이다. 대중이 의미 있는 의견 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의 보호와 충분한 정보 제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국립생물탐사자문위원회는 무엇이며 위원회는 ABS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국립생물탐사자문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SANBI), 남아프리카공화국국립공원(SANParks), 주 소속 자연보존기구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과학기술부, 보건부, 무역산업부 등 각종 중앙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발급당국을 자문한다. 또한 이익공유계약을 평가함에 있어 결집된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관이 계약 및 허가증 신청서의 승인을 고려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익공유계약의 당사자 간 분쟁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재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다. 대안은 분쟁을 중개에 회부하거나, 이것이 실패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이 계약에 포함될 경우, 당사자들이 중개인이나 중재자 선정에 합의할 수 없을 때 중개인 및 중재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분쟁 시 발생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명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 •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반드시 생물탐사 신탁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DEA 국장은 이익공유계약의 조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자금을 지급한다.

#### • 이익공유계약의 재검토가 가능합니까?

BABS 규정 부속서 8의 이익공유계약 표준양식은 계약의 재검토를 허용하고 있다. 이익공유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재검토의 이행 시기 및 빈도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용자는 계약이 재검토되기 적어도 한 달 전에 제공자에게 신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공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익공유계약은 이용자가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제공자에게 생물

탐사 프로젝트 및 관련 이익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자주 보고할 것인지 그 주기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상 이용자가 최신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그 장소 및 매체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제공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번역하거나 단순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3-9 협상 가능한 이익의 유형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협상하는 이익의 유형은 현지 상황 및 자원이나 지식에 접근하는 회사 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이익공유계약은 상업화 단계에만 해당하는 법적 요건이지만, 순수 연구 및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 연구에서도 이익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와 제공자는 모든 형태의 이익공유 방안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이 당사자 전원에게 공정한지의 여부는 추후 장관이 결정한다. 이익의 범위 및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이익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술기관은 장학금 및 기타 형태의 학생/교육 지원을, 영리회사는 로열티나 라이선스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보통 금전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비금전적인 이익이 보다 항구적인 이익을 낳기도 하는데, 역량강화 또는 기술이전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제공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단/중/장기적인 금전적 그리고 비금전적 이익의 목록은 별첨 3에 나와 있다.

# 4

## 규제당국

토착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생물탐사의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

# 4

## 규제당국

### 4-1 서론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가 생물탐사 허가 신청서를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 협상 및 체결에 있어 당국의 지원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익공유계약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생물다양성법, BABS 규정 및 기타 관련법의 의무적인 법적 요건뿐 아니라 임의적인 절차 및 조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 규제당국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 각종 활동, 허가, 발급당국에 대한 개요 제공 및 허가증이 필요한 상황 설명
- 의사결정 시 감안해야 할 공법 고려사항 설명
- 대중참여 과정 및 비밀정보 취급 시 감안해야 할 공법 고려사항 설명
- 이익공유계약 상의 수익자 및 전통지식 보유자를 확인하는 기준 제시
- 이익공유계약 평가 시 고려할 요소 및 이익 배분 방법 설명
- 사전통보승인 존재여부 판단 방법
- 의사결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자원의 지속가능성 관련 고려사항 설명

### 4-2 각종 활동, 허가 및 발급당국의 구분

신청서 접수 시, 당국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제안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 즉 요구되는 허가증의 유형이다. 표2는 생물탐사 및 연구를 위한 허가증 요건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생물탐사 프로젝트에는 발견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두 단계가 있다. 이러한 단계는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별첨 2 용어설명 참조)에 정의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생물다양성법에서는 발견 단계에 관여하는 자가 장관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하지만 허가증의 취득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토착생물자원의 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된다.

- 생물탐사가 발견 단계일 경우, 수자원환경부 장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
-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의 수출은 BABS 규정에서 다루지며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DEA 발급)이 요구된다.
- 활동이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일 경우, 생물탐사 허가증이 요구된다. 토착생물자원의 수확 또는 수집 전, 관련 주당국 혹은 관할당국의 허가증도 필요하다.
-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의 수출의 경우, 발급당국은 DEA가 되며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이 필요하다. 토착생물자원의 수확 또는 수집 전, 관련 주당국 혹은 관할당국의 허가증도 필요하다.
-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의 경우, 수출 시에만 BABS 체제 하에 허가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수출 허가증의 발급당국은 관련 MEC이다. 신청자는 주 법률상의 요건에 따라 관련 주당국에서 수집 그리고/또는 연구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멸종위협 또는 보호종(TOPS)이나 CITES종은 BABS/CITES 통합 허가증, BABS/TOPS 통합 허가증 또는 BABS/TOPS/CITES 허가증을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꽃을 피운 Harpagophytum procumbens in flower 사진 제공: Ulrich Feiter



Pelargonium sidoides의 꽃 사진 제공: Ulrich Feiter

표 2 생물탐사 및 연구 관련 허가의 개요<sup>3)</sup>

활동	허가증 유형	관련법	발급당국
<b>국내(남아프리카공화국 내)</b>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	생물탐사 허가증은 불필요 하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수집 그리고/또는 연구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음	면제 통지서	관할 또는 토지 소유권을 가진 관련 주 또는 정부기구 예.SANParks, SANBI, 공공건설부)
생물탐사 (발견단계)	필요 없음 - 통보 절차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장관에게 통보
생물탐사 (상업화 단계)	생물탐사 허가증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장관
<b>해외(남아프리카공화국 외)</b>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수출 허가증	TOPS/CITES 및 BABS 규정	MEC
생물탐사 (발견 단계)를 위한 수출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장관
생물탐사 (상업화 단계)를 위한 수출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장관

장관은 수자원환경부 장관을, MEC는 해당 주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책임지는 주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을 뜻함.

2) 정부관보 제30739호, 제R149호(2008. 2. 8)  
3) 정부관보 제33361호(2010. 7. 7)

설명 18 허가의 필요여부 확인

허가의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당국은 '상업화'의 정의조항과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법률 하에 허가증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로서 자원을 수출하지 않는 경우
- 토착생물자원이 아닌 자원(2장 정의 및 생물다양성법 제80조 제2항 참조)
-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발견 단계(생물다양성법 제2조와 BABS 규정 제1조 '발견' 및 '상업화'의 정의 참조)
- 장관이 발급한 면제 통지서에 따른 면제사항<sup>2)</sup>

## 4-3 공법 고려의 중요성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정 외에 의사결정 및 공공참여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관련된 다수의 법이 존재한다. 행정 의사결정, 정보에 대한 접근, 비밀유지 및 공공참여와 관련된 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법의 핵심요소에 대한 개요와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다.

### 1. 의사결정을 위한 공법 고려사항

장관의 계약 승인 결정과 발급당국의 허가증 발부 결정은 행정정의촉진법(PAJA, 2000년 제3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강력할 필요가 있다. 법률체제를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며 합리적인 결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 행정정의촉진법(the Promotion of Administrative Justice Act, PAJA)

헌법 제33조는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절차상 공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사유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는 PAJA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PAJA 제1조에서는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당사자의 권리에 부담을 주거나 부정적 효과를 주는 외부적·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결정의 부작위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 제88조 제3항은 허가 발급당국의 허가 발급 또는 허가 발급의 거절 결정은 PAJA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PAJA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장관의 상소패널 임명 및 패널 구성 결정(제95조 제1항 가호)
- 장관, MEC 또는 상소패널의 상소 결정
- 허가증 갱신 또는 수정 결정

#### PAJA상 요건

행정결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행정결정이 합법적 결정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법령 또는 정당한 위임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 수권법령의 일반적인 목적을 실행한다.

장관과 MEC의 권한에 대한 위임은 국가환경관리법(NEMA, 1998년 제107호) 제42조 및 제42A조에 의해 규제된다. 이 조항들은 생물다양성법에 적용된다. NEMA 제42조에 따라 ‘생물탐사 허가증’과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증’ 발급에 관한 장관의 권한은 국장에게 위임되었다. 한편, 이익공유계약 및 물질이전계약 승인 권한은 위임되지 않았다.

PAJA 제6조는 수권조항 상 규정된 의무적인 주요 절차 또는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처분이 법률의 오류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을 경우,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결정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결정이 합리적이려면 결정과 의사결정자에게 주어진 정보 간, 그리고 수권조항의 목적과 결정 간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PAJA 제6조는 “무관한 고려사항이 감안되었거나 관련된 고려사항이 감안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PAJA에 따른 사법심사는 상소와는 다르다. 사법심사 시 법원은 의사결정자와 동일한 결정을 할 것인지가 아닌 해당 결정이 상황 상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물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국이 다음의 행동을 취했다고 확신할 경우 당국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였다.
- 각종 요소 간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였다.
- 명시된 법률상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장관의 계약 승인여부 결정 및 발급당국의 허가증 발급 여부 결정에서 반드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했다는 점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장관 또는 발급당국에게 전달되는 권고는 반드시 모든 관련정보에 대한 개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가 권고안에 반할 경우라도 해당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당국 수준의 절차가 아무리 철저하다 하더라도, 해당 절차로부터의 결론이 강력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시되지 않았을 때, 사법심사는 성공적일 수 있다.

행정결정은 반드시 절차상으로 공정해야 한다.

PAJA는 절차상으로 공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체제를 명시하고 있다. PAJA의 절차 요건은 생물다양성법 하에 공포된 규제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PAJA의 기타 관련 조항

PAJA 제4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의사결정 전 조사를 수행하거나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그러한 결정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때 적용된다.

PAJA 제5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는 90일 내에 결정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서는 해당 요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PAJA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법심사에 이르기 전 반드시 내부적인 해결책을 모두 강구해야 한다. 즉, 사법심사는 최후의 수단이다. (비록 법에서는 정의 실현의 경우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법률에서 상소절차를 규정할 경우, 그러한 상소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계약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장관의 결정은 PAJA 제4조를 준수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법 또는 BABS 규정상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이러한 조항이 PAJA 조항에 우선한다. 따라서 PAJA 조항은 생물다양성법 또는 BABS 규정상 반드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결정에 적절하다. 예를 들어, 허가증 발부 결정 또는 장관의 계약 승인 여부 결정에 적용된다.
- 생물다양성법 제94조와 BABS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상소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허가증 발부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 2. 공공참여, 정보접근 및 비밀유지

생물탐사 활동 및 이익공유계약은 종종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공익조직 및 공동체는 체결된 계약이 공평하지 않으며, 사익 및 독점이익을 위해 공공자원이 개발되고 공동체 및 전통지식 보유자가 부당하게 착취당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공공참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관은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익공유계약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의 비밀 여부 판단 시, '비밀정보'의 정의를 두고 있는 BABS 규정 및 정보접근촉진법(PAIA, 2000년 제2호)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PAIA가 BABS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즉, 비밀유지의 이유로 계약상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PAIA에 따라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ABS 규정에 명시된 비밀심사 대신 PAIA에 규정된 비밀심사가 고려된다. 따라서 의견청취를 위해 이익공유계약을 공개할 경우, 장관은 PAIA를 지침 삼아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한다.

BABS 규정 및 PAIA에 의하면, 상업적인 정보는 이해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될 수 있다. 장관이 의견청취를 위해 이익공유계약을 공개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 전문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PAIA에 제시된 비밀심사에 근거하여 어떤 조항을 상업비밀로 간주하는지를 묻는 표준서한을 이들에게 보내야 한다.

PAIA 제36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영업비밀
- 영업비밀 이외의 것으로서 공개 시 계약당사자 또는 제3자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재무적, 상업적 정보 및 과학기술 정보
- 공개 시 계약 또는 기타 협상에서 계약당사자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 공개 시 계약당사자, 연구수행자 또는 연구주체에 심각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거나 상업적 경쟁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 관련 정보

대중이 의미 있는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 정보의 보호와 충분한 정보 제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생물다양성법 제100조 제2항 나호에 따른 요건). 비밀내용을 지정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나, DEA는 이러한 지정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참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PAIA 관련 요청은 DEA 국장에게 직접 발송되어야 한다.

## 설명 19 의무준수 점검표 - 의무적인 절차상의 요건

의사결정자에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가?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적절한 발급당국의 파악
- 허가의 필요여부

신청서의 내용을 판단하기 전, 발급당국은 다음의 공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소정 양식의 신청서가 사용되었다.
- 신청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착생물자원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착생물물질로 변형된 외래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다.
- 소정의 신청 수수료가 지불되었다.
- 필요 시, 이익공유계약서 또는 물질이전계약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었다.
- 상기 계약 또는 약정이 소정 양식에 누락사항 없이 작성되었다.
- 계약을 통해 수령하는 금액은 생물탐사 신탁기금에 납부되도록 계약 상 규정하고 있다.
- 신청자(또는 공동 신청의 경우 신청자 중 1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등록된 법인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가 제공되었다.

### 4-4 이익공유계약 및 물질이전계약

#### 양식 작성

이익공유계약 및 물질이전계약은 반드시 생물탐사 허가증 발급 전에 체결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ABS 규정에 있는 양식<sup>4)</sup>은 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소정 양식을 따르고 양식의 각 란에 완전하고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물질이전계약 또는 이익공유계약 필요여부 판단

- 신청자가 상업적 생물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다른 공동체 등에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필요로 한다.
- 신청자가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으며(예를 들어, 해당자원이 자신의 소유지에 있을 때) 토착지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요구되지 않으나 **생물탐사 허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 신청자가 토착지식을 이용하지만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익공유계약**만이 요구된다.

### 4-5 이익공유계약의 평가 및 이익 배분

허가증 발부 결정은 자유재량이다. 계약 승인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에 대한 승인 결정 시, 장관은 계약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일정한 소정요건<sup>5)</sup>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 '공정하고 공평'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뜻은 반드시 문맥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함이라는 용어는 절차상의 공정함을, '공평'함이라는 용어는 결과상의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쪽이든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일부 제공자들에게 생기는 이익이 다른 이들에게 생기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관은 계약에 대한 자문 청취를 위해 타인과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이 공정하고 공평한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이 공정하고 공평한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력한 이익공유계약은 주로 이해당사자 간의 포괄적인 협의와 투명한 협상, 그리고 모든 정보 공개를 수반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다. 이는 '공정'한 계약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다. 때때로 계약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기술적인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은 다른 무엇보다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 자원 또는 지식의 최종적 이용
- 제품을 상업화하는 산업부문
- 관련 회사
- 지식재산권 취득 여부

4) MTA-BABS 규정 부속서 7; BSA-BABS 규정 부속서 8.  
5) BABS 규정 제 17조 제4항.



- 배타성 정도(예를 들어, 수혜자가 다른 이해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프로젝트의 개발현황
- 제품생산에 전통지식이 이용된 수준
- 제공되는 지식 또는 자원의 특수성
- 이용자 또는 제공자의 사전 투자
- 유사한 타 기술 또는 제품의 존재 여부
- 시장요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이익은 선금금, 단계별 목표달성 기술료(특허출원이나 임상 시험의 성공적인 종료 등 주요 사건과 연계), 주식투자 및 로열티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설명 20은 부문별로 예상되는 이익의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명 21은 로열티 범위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일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천연물개발과 관련된 각종 측면에 대해 규제당국이 전문가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분야의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협조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지원하고 공동체가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을 개발하도록 돕는 ‘정직한 중개인(honest broker)’<sup>6)</sup>을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설명 20 이의공유계약의 공정성 및 공평성 평가

이의공유의 성격과 형태는 부문별로 상당히 다르며 업계·업체 간에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여하는 산업의 재정 현황 및 연구개발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유되는 이익의 규모 및 성격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에는 실패비용을 포함하여 8억2백만 불의 비용과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작물과 화훼품종 또한 연구 집약적이다. 이에 반해 생명공학산업의 경우, 바이오연료 및 세제용 효소 등의 제품 개발주기는 흔히 주요 효소 파악 후 1년에서 2년이다. 연구개발(R&D)의 위험 및 투자는 이익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품에 따라 다르다.

상품 수익 또한 부문별로 현저하게 다르며, 따라서 공정함에 대한 공식을 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2006년에 105개의 의약품이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블록버스터(blockbuster)’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블록버스터 의약품 한 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생물로부터 신규 세제를 개발하는 회사의 매출액보다 큰 반면, 신약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 및 R&D 비용 또한 신규 세제 개발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상업화 사슬도 매우 다르다. 종자산업의 경우, 최종 제품에 이르는 개발 사슬이 2개 이상의 회사에 걸쳐 있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제약산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 생명공학산업의 경우, 산업 공정에서 미생물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는 생물물질이 담겨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른 이의공유 전략을 수반하게 된다.

## 설명 21 로열티 범위 검토

(상업적 용어로는 흔히 라이선스계약으로 알려진) 이의공유계약의 로열티 범위는 상업화 및 개발 단계, 제품 성격, 배타성 정도, 지역적 범위, 예상수익, R&D 투자 규모, 관련 업체 및 영역 간 공유된 위험의 정도(예, 의약품의 고위험·고수익 대비 생약 및 대체의약품의 저위험·저수익)에 따라 현저히 다르다. 이는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추산이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핀치(2001)는 생명공학 및 제약 부문의 제품개발에 대하여 단계별로 로열티 범위를 제안한 바 있다.<sup>7)</sup> 다수의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순매출액의 5~6%를 로열티로 추정하고 있다. 선지급금을 늘리고 로열티 금액을 줄여 대가 지급이 앞당겨지는 경우, 제공국은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추가적인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과학역량이 높을수록 공정한 계약을 개발할 수 있는 협상력 또한 강하다.

6) 생물다양성법 제82조 제4항 나호 참조, BABS 규정 제10조 제3항 나호, BABS 규정 제8조 제2항과 함께 참조.

7) Finch, S. 2001. Royalty rates. Current issues and trends. Journal of Commercial Biotechnology, Volum 7.



자원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한 합의 사진 제공: PhytoTrade Africa

#### 4-6 이해당사자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 및 확인

##### 이해당사자의 파악

이익공유계약의 적절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이해당사자를 다음의 두 부류로 파악하고 있다(제82조).

1.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자
2. 생물탐사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용 방식 또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토착공동체 또는 개인

##### 정당한 이해당사자의 파악 및 확인

발급당국은 이해당사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는 정당한 이해당사자의 파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BABS 규정 제8조 제1항 가호 또한 정당한 이해당사자의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발급당국의 역할이 아니며, 허가증 신청자가 관련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발급당국은 전문가 증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가 보호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이해당사자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데 비해 생물탐사에 기여하는 토착생물자원의 이용방식이나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토착공동체 또는 개인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BABS 규정은 토착공동체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리더십 구조를 갖추고 특정 지리적 영역에서 거주하거나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리더십 구조는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도자도 될 수 있다.

##### '공동체'에 대한 판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복잡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정의하는 관습법 및 살아있는 법과 관행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다수의 법률사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법과 관행에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 또는 소유권에 대한 접근, 이용 또는 그로부터의 이익을 결정하는 공유된 규범도 포함된다.<sup>8)</sup> BABS 규정상의 정의는 이렇게 발전하는 법학에 맞춰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특정 지리적 영역’이라는 용어는 현재 또는 과거의 행정구역(예. 주 경계 또는 기존의 흑인자치구역 경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습법적 체계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해당사자가 ‘공동체’인지 여부와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준수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성문 또는 불문규칙, 관례, 관습 또는 관행에 따라” 공동체가 관련자원을 관습적으로 이용해왔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신청자는 전문가 증언을 통해 공동체 현황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자원 또는 지식의 합법적인 보유자를 파악하고, 찾아내어 함께 협상하기 위한 정당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체가 특

8) 고등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톱고안(Tongoane and Others) 대 농림국토부 장관 판결 참조 2010 (6) SA214 (CC). 고등법원은 가족, 부족, 마을, 단체 차원에서 존재하는 관습체계상 공동체 권리의 “다층적 성격”을 인정했다. 공동체의 정의는 반드시 인종차별 법률을 통해 부분적으로 그 형식 및 내용이 부여된 상위 공동체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하위 또는 독립 공동체를 포함해야 한다.

정 지리적 영역에 대해 권리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원의 관습적 이용에 대한 내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전통지식 보유에 대한 적절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된다.

### 2개 이상의 공동체가 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지식은 특정한 개인 또는 가족이 보유할 수 있으나,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이 한 개의 단체에 제한되어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보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거나 자원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특정 공동체(예. 산족) 내에서 지식이 공유된다. 전통지식 보유자의 파악 및 확인 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해당사자의 권리

이해당사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 생물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
- 승인의 부여 또는 보류
- 생물탐사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 생물탐사 신탁기금에 납부되었는지에 대한 연례 통보 및 해당 금액의 수취

토착공동체가 이해당사자일 경우, 그러한 공동체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 이익공유계약의 체결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 중 1인이 자신들의 대표 역할을 하도록 승인
- 그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고 공동체가 생물탐사 프로젝트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이익공유계약의 체결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결의안 채택

### 이해당사자가 자원 또는 지식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지만

#### 이익공유계약 참여를 거절하는 경우

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은 반드시 계약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없다고 간주된다.



마물라 견질 벗겨내기 사진 제공: Myles Mander

### 4-7 사전통보승인 절차 단계 파악

생물다양성법은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가증 발급 전 발급당국이 반드시 다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전통보승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 최종 기대결과를 포함한 관련 문서 전체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되었다.
- 이러한 공개를 기반으로 이해당사자가 접근제공 또는 지식공유를 승인하였다.
-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이 이해당사자와 체결되었다.
- 상기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이 장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sup>9)</sup>, 이 때 장관은 반드시 이익공유계약이 당사자 전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BSBA 제17조 제3항 참조).

9) 생물다양성법 제83조 제2항 및 제84조 제2항.

다음은 발급당국이 해야 하는 2가지 주요 질문이다.

**1.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었는가?**

신청자는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된 모든 정보를 나열해야 한다. 관련정보의 전면공개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다.

전면공개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는 책임은 발급당국에 있다. DEA가 전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길 이유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2. 계약의 승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익공유 면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비록 계약의 공정성과 공평성의 확인 및 승인은 장관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당국 역시 물질정보공개 및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한다.

발급당국과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에 대해 숙고하였고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급당국은 중복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법적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관에게 계약 승인여부를 권고하는 제안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이 제안서는 발급당국이 물질정보공개 및 사전통보승인이 있었음을 확신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장관은 발급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장관을 위한 제안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 물질정보공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공개에 근거하여 관련 이해당사자가 승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발급당국의 확신. 이는 장관이 아닌 발급당국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 또는 승인의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세 부사항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 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과 함께 준비
- (필요 시) 이익공유계약의 공정성과 공평성 평가 및 계약이 다음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근거한 계약의 승인 여부 권고
  - (a) 토착생물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개인, 국가기관 및 토착공동체의 과학지식과 기술역량의 향상, 또는
  - (b) 관련 토착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기타 활동<sup>10)</sup>
- ‘기술자문을 제공할 능력을 갖춘’자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 계약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계약이 논란의 여지가 많을수록, 이의가 제기될 확률이 높으며, 권고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장관에게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허가증이 거부될 경우, 발급당국은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결정의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관 또는 MEC에게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해야 한다. 장관 또는 MEC는 결정 시 제안서에 제시된 사유로 인해 결정을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제안서와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다른지 명시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상소 또는 사법심사가 진행될 경우,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된 제안서와 결정사유는 해당 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상소절차**

허가증 또는 조건부 허가증에 대한 발부결정과 허가증 거부결정은 장관을 상대로 한 상소의 대상이다. 장관은 신청서를 재고하거나 이를 관련 MEC 또는 상소패널로 전달할 수 있다(생물다양성법 제94조). 중요한 점은 제93A조 하의 허가증 갱신 또는 수정결정은 상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관, MEC 또는 패널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상소 중에도 결정은 정지되지 않는다. 상소 시, 상소인은 결정이 정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 산정**

BABS 규정은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첫째 날은 제외되며 마지막 날은 포함된다. 즉, 사유서 요청 시, 요청 접수일은 소요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유서 발급일은 포함된다.<sup>11)</sup> 허가증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10) BABS 규정 제17조 제4항 참조.  
11) 해석법 1957년 제33호 제4조 참조.

## 4-8 환경영향,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보전이익

생물탐사에서는 2개의 주요 보전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수확 또는 수집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영향이며, 두 번째는 생물탐사로 인한 보전이익이다.

### 환경영향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서는 소량의 표본만이 요구되지만, 상업화 단계의 실행에서는 상당한 양의 물질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수확 및 환경영향 문제가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이용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다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허가 발급이 보류될 수 있다.

- 허가증 발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거나 최소화 또는 개선될 수 있다. 또는,
- 활동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이 자원의 보전이 위협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신청자는 관련 주와 협의하여 일부 종에 대한 최대 지속가능한 수확량과 수확 계획을 결정하고 주당국 또는 기타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집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집 허가증 발부 결정 시, 관련 당국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적용된다. 생물탐사 허가증이 이미 발급되었다고 해서 주당국이 반드시 수집 허가증을 발부할 의무는 없다. 국내 및 해외 발급당국은 필요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독립적인 위험평가 또는 전문가 증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sup>12)</sup>

### 보전이익

생물탐사에 찬성하는 핵심 논거는 생물다양성의 이용이 자원보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원보전을 위해서, (이상적으로는) 생물탐사로부터 얻는 주요 이익은 자원이 추출된 생태계 또는 이용된 종을 지원하거나 과잉개발로부터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적일 수도 있고 분류학 정보, 훈련, 표본 예치, 지식 생성 등 비금전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익공유계약 상 보전이익을 포함시켜 '윈-윈(win-win)'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4-9 허가증 발부

발급당국은 허가증 발부 전 반드시 다수의 실질적인 쟁점에 대해 확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을 요청할 재량권을 가진다.

- 추가정보(생물다양성법 제88조 및 BABS 규정 제7조 제5항 나호 및 다호), 그리고/또는
- 위험평가의 실시 또는 전문가 증언의 제공(생물다양성법 제89조)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확신을 하지 못할 경우, 발급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 재량권을 행사하여 추가정보 또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허가증 발부 거절 결정은 발급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조사를 발급당국이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 추가정보는 신청자가 자체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해야 한다.

발급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확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보호되었다.
- 이해당사자에게 물질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으며 이해당사자로부터 통보승인을 취득하였다(생물다양성법 제82조 제2항 및 BABS 규정 제8조 제1항).
- 허가증 발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거나 최소화 또는 개선될 수 있다 (BSBA 제7조 제2항 가호).
- 활동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이 자원의 보전에 위협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BSBA 제7조 제2항 나호).
- 또한, BABS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출은 다음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 (a)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 (b)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발전, 또는
  - (c)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과 기관의 과학지식 및 기술역량 향상

12) NEMBA 제89조, BABS 규정 제7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제7조 제5항 나호 및 다호.

### 생물탐사 신탁기금

이익공유계약 승인 후,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반드시 이익공유 신탁기금에 기탁해야 한다. 또한 이 기금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금액이 지급된다. 이 기금은 자율재량기금이 아니며 이해당사자에게 송금하기 위한 '은행 계좌'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리수수료는 없으며 비용지급은 이익공유계약 상의 조건을 엄격히 따른다.

생물탐사 신탁기금은 지역 차원에서 이익 분배를 위해 설립하는 공동체 신탁기금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공동체는 이익공유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기금은 자체적인 신탁 관리자 및 이익공유 규칙을 갖추어야 한다. 승인된 이익공유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생물탐사 신탁기금으로부터 공동체 신탁기금으로 지급된다. 생물탐사 신탁기금은 단순히 이 돈을 공동체에 송금할 뿐이며 분배 및 이용방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5

별첨

별첨 1  
약어

<b>ABS</b>	접근 및 이익공유 Access and benefit sharing
<b>BABS</b>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b>BMP</b>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Biodiversity Management Plan
<b>BSA</b>	이익공유계약 Benefit-sharing agreement
<b>CBD</b>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CITES</b>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DAC</b>	예술평화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DAFF</b>	농림업수산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DEA</b>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b>DOH</b>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b>DST</b>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DTI</b>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b>GMO</b>	유전자변형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b>IBR</b>	토착생물자원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
<b>IKS</b>	토착지식체계 Indigenous knowledge system
<b>IPR</b>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ITPGRFA</b>	식량·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b>MAT</b>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b>MLRA</b>	해양생명자원법 Marine Living Resources Act (No. 18 of 1998)
<b>MTA</b>	물질이전계약 Material transfer agreement

<b>NEMA</b>	국가환경관리법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No. 107 of 1998)
<b>NEMBA</b>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No. 10 of 2004)
<b>NGO</b>	비정부단체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b>NIKSO</b>	국립토착지식체계청 National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Office
<b>OC</b>	해양 및 연안 Oceans and Coasts
<b>PAIA</b>	정보접근증진법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No. 2 of 2000)
<b>PAJA</b>	행정정의증진법 Promotion of Administrative Justice Act (No. 3 of 2000)
<b>PIC</b>	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b>R&amp;D</b>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b>SANBI</b>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South African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b>SANParks</b>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공원 South African National Parks
<b>TK</b>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b>TOPS</b>	멸종위협 또는 보호종 Threatened or protected species
<b>TRIPS</b>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b>UEBT</b>	윤리적 생물무역 연합 Union for Ethical Biotrade
<b>WIPO</b>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용어설명

**로열티 Royalty:** 이용에 기반을 둔 지급금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자산, 특히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급한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입 혹은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합의하거나 제품의 판매 단위 당 고정된 금액으로 합의한다.

**마일스톤 지급금 Milestone payment:** 생물탐사계약에서 중요한 새로운 개발 및 단계에 지급되는 금액.

**물질이전계약 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BABS 규정 부속서 7에 있는 물질이전계약은 허가증 신청자와 허가증 신청과 관련된 토착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자(국가 기관 또는 공동체 기관 포함) 간에 체결된다.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생물다양성협약에 담긴 ABS 조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2년에 채택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 입법 초안을 마련하고 ABS 계약을 협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사전통보승인이라는 용어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정의되어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확인된다.

- 사전(prior): 지식 혹은 생물자원에의 접근이 일어나기 전에
- 통보(informed): 그 영향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지식 또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보의 진실한 공시에 기반을 두어,
- 승인(consent): 정부 그리고/또는 이해당사자 혹은 지식/권리 보유자의 분명한 승인

따라서 사전통보승인은 적절한 정보 공시에 기반을 둔 생물자원 그리고/또는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사전 승인이다.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조건과 당사자 간에 공유될 이익에 관하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

**생물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Biodiversity:**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종 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국제연합(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된 국제 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과 그 이용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등 세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 현재 CBD 당사국 수는 총 195개국 및 유럽연합(EU)이다.

**생물무역 Biotrade:** 생물무역(Biotrade)은 생물다양성에서 유래한 제품들의 상업적 수집, 프로세싱, 판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 ‘생물무역(BioTrade)’이라고 표현할 경우 이는 종종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기준과 관련이 있다.

**생물탐사 Bioprospecting:** 생물탐사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연구, 개발, 응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물탐사 신탁기금 Bioprospecting Trust Fund:** 생물다양성법 제85조 제1항(BABS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금이며,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발생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모든 수익은 이 기금에 기탁되어야 한다(아래 ‘신탁기금’ 참고).

**생물탐사 허가 Bioprospecting permit:** 생물다양성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되며,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상업화 단계에 참여하기 위한 허가이다.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 Discovery phase of bioprospecting:** 생물탐사 프로젝트에서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상업 또는 산업적 이용의 성격 및 정도가 아직 상업화 과정에 들어가기에는 분명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의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이용이다 [국가환경법(개정)].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 Commercialisation phase of bioprospecting:**

생물탐사 프로젝트에서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상업 또는 산업적 이용의 성격 및 정도가 상업화 과정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경우의 생물탐사 단계이다. '상업화'로 보이는 활동들에는 지식재산 출원, 임상시험 착수, 제품 개발, 또는 토착생물자원의 증식이 포함된다[국가환경법(개정, 법률 제14호, 2009년) 및 BABS 규정].

**생물해적행위 Biopiracy:** 기업이나 연구자가 특허 체계를 통해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오남용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권한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태계 Ecosystem:** 식물, 동물 및 미생물 군락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생물학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복합체(생물다양성법).

**서식지 Habitat:** 종 또는 생태학적 군집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장소(생물다양성법).

**선행 기술 Prior art:** 발명 전에 발견되었거나 특허출원에 의해 발명이 공개되기 전에 존재한 지식. 인지된 생물해적행위로부터 그들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공동체는 선행기술로서의 전통지식을 기록하기 위한 전통지식 DB를 구축해오고 있다.

**수출 Export:**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장소에서 다른 국가 또는 공해(international waters)로 반출 또는 이전시키는 것(생물다양성법).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 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2001년 국제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에서 채택된 조약. 조약의 목적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의 이용을 통해 이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확립하는 다자간 체계를 설립한다.

**신탁기금 Trust fund:** 위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에게 관리를 의뢰하는 자본.

**유전물질 Genetic material:**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생물다양성법).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생물다양성법).

**이익 Benefit:** 생물탐사 활동들은 다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들은 사실상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익공유계약 Benefit-sharing agreement:** BABS 규정 부속서 8에 있는 이익공유계약은 허가증 신청자와 이해당사자간에 체결된다. 이익공유계약은 허가증 신청과 관계된 생물탐사를 통해 발생한 향후 이익들을 이해당사자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Stakeholder:** 생물다양성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개인, 국가 기관 또는 공동체 기구, 또는 제안된 생물탐사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생물탐사를 위해 이용되는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용 방식 혹은 전통지식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토착생물자원을 발견한 토착공동체 또는 특정 개인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이용 방식 혹은 전통지식 Traditional use or knowledge:** 토착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준수, 동의, 인식한 성문 또는 불문의 규칙, 용법, 관습 또는 관례에 따라서 토착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착생물자원의 관습적 이용 방식 혹은 지식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토착공동체가 관련 토착생물자원에 대하여 발견한 것을 포함한다(BABS 규정).

**접근 Access:** 생물자원에의 접근에 대한 정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법 또는 BABS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생물다양성 이용 맥락에서 보면 생물자원의 접근이란 생물탐사나 다른 연구의 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 또는 토착전통지식을 획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공국 Provider country:**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종 Species:**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개체와 상호 교배되지 않는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의 종류로 아종, 품종, 변종, 지리적 품종, 균주, 잡종 또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개체군 등이 포함된다 (생물다양성법).

**지속가능한 이용 Sustainable use:** 장기적으로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생태계의 생태적 지속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방식과 속도로 토착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생물다양성법).

**토착공동체 Indigenous community:**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특정 지리적 영역에 살거나, 그 지리적 영역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 허가증 신청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 이용이 제안된 생물탐사활동에 기여하거나 일부가 되는 토착공동체; 또는
- 허가증 신청과 관련된 토착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 또는 발견이 제안된 생물탐사활동에 이용되는 토착공동체(BABS 규정).

**토착생물자원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 토착종의 파생물 혹은 유전물질을 포함한, 토착종의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

(a)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야생에서 얻어지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접근된 토착생물 자원으로, 여기에는 재배, 사육, 경작되거나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재배 또는 변형된 토착종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가 포함된다.
- (ii) 상기 (a)(i)에서 언급한 토착종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의 품종, 변종, 스트레인, 잡종 혹은 생식 가능한 형태
- (iii) 야생에서 얻었던 그 밖의 출처에서 접근했던, 상기 (a)(i) 또는 (ii)에서 언급한 토착종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유전물질 또는 화합물을 가지고 생물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변형된 외국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

(b) 그러나, 다음은 제외한다.

- (i) 인간 기원의 유전물질,
- (ii) 상기 (a)(iii)에서 언급한 외국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의 동물, 식물 혹은 다른 생물체, 그리고
- (ii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의 조건에서 열거된 토착생물자원

**토착이용 혹은 지식 Indigenous use or knowledge:**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지식, 발견, 또는 그에 대한 전통적인 이용 방식을 포함하여, 허가증 신청 대상이 되는 생물탐사 또는 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지식, 발견 또는 이용(BABS 규정). (아래 '전통 이용 또는 지식' 참고)

**토착종 Indigenous species:** 남아프리카의 영역 내 자연에서 자생하거나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생물종. 다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남아프리카에 도입된 종은 제외한다.

**특허 Patent:** 신규성, 진보성 및 무역, 상업 또는 농업적 이용성을 가지고 있는 발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특허법, 법률 제57호, 1978).

**파생물 Derivative:** 동물, 식물, 기타 생물체의 일부, 조직(tissue) 또는 추출물(extract). 파생물은 날 것(fresh) 또는 보존되거나 가공된 형태일 수 있으며 생물체의 일부, 조직 또는 추출물에서 유래한 모든 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다.

**퍼블릭 도메인 정보 Public domain information:** 발간 또는 기타 형태로 이미 알려진 정보 혹은 지식;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의해 보호 받지 않는 공표, 발명 및 절차의 영역

**현지내 상태 In-situ conditions:** 생물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지외 상태 Ex-situ conditions:** 자연서식지 밖에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보관하는 것으로, 유전자은행, 종자은행, 배양센터, 박물관, 표본실이 그 예이다.

# 이익공유 유형

본 가이드라인, 나고야 의정서 및 BABS 규정 부속서 8을 참고함

## 단기 이익공유 유형

- 선급금
- 정보
- 종 목록
-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당사자에 대한 사례
- 국가 기관 보유 확증 표본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국제보존 기관에 대한 접근
- 사진 및 슬라이드 복제물
- 지역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 메뉴얼, 소책자 및 기타 문건
- 수집된 샘플에 대한 수수료

## 중기 이익공유 유형

- 접근 수수료
- 기타 수수료: 자료료, 시설 및 기반시설 이용료 등
- 연구·개발 단계별 지급금(마일스톤)
- 기업에서 고용한 공동체 소속인에 대한 임금 - 예: 보조원 혹은 안내원
- 상호 합의된 우선권
- 환경 교육
- 연구 기금
-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
- 제공된 계획서, 보고서 및 출판물의 복제품
- 과학적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협력, 협업 및 기여 - 예: 연구과정에서의 지역보조원, 안내원 및 정보를 포함
- 생물탐사의 목적, 방법, 조사결과와 지역 언어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 학생 훈련 및 지원
- 생물자원에 관련된 교육
- 관련 과학적, 법적 및 관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역민 교육
- 교육 및 훈련에 있어 협력, 협업 및 기여
- 특히 생물자원과 연관된 기술 및 지식으로의 접근 및 이전
- 기술 이전을 위한 능력 강화
- 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
- 접근 규정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능력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 생물목록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로의 접근

## 장기 이익공유 유형

- 사회적 인식
- 상업화의 경우 라이선스로 지급
- 로열티 지불액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기탁하는 특별 부담액
- 합작투자
- 조달계약
-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 출판물의 공동 저작
- 제품 개발 참여
- 기관 역량 개발
- 지역 경제에 기여 - 예: 개발 및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
- 유전자원의 현지외 시설 출입
-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
- 전통지식 및 전통적 이용 방식에 대한 인정 및 진흥



정책/법/법안/규제	내용 및 웹링크	책임당국
세관 및 소비세법 (1964년 제91호)	특정 제품의 수입, 수출 또는 제조 금지 및 통제를 규정한다. <a href="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South_Africa/ZA_Customs_Excise_Act_1964.pdf">http://www.vertic.org/media/National%20Legislation/South_Africa/ZA_Customs_Excise_Act_1964.pdf</a>	국고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1997년 제15호) 개정법 (2006년 제23호)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개발, 생산, 이용 및 응용을 통제한다. <a href="http://www.info.gov.za/acts/1997/act15.htm">http://www.info.gov.za/acts/1997/act15.htm</a> GMO 개정법은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시행하고 기관, 허가증 신청절차, 위험평가, 법적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였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7850">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7850</a>	DAFF.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가 조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공공 재정연구 및 개발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보호법 (2008년 제51호)	공적 자금으로 창작된 지식재산에만 적용된다. 조항은 당사자들 간 합의된 내용과는 관계없이 공적 자금으로 지식재산을 창조하는 기관이 그 지식재산을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공동으로 창조되었을 경우 또는 지식재산 창조자와의 이익 공유에 대한 적절한 방편이 취해졌을 경우에 한하여 민간 기업은 지식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다. <a hre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18804_act_51-08.pd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18804_act_51-08.pdf</a>	DST
특허법 (1978년 제57호) 개정법 (2005년 제20호)	이 법의 목적은 발명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허등록 및 허가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미생물과 미생물학적 절차에 대한 특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식물의 특허는 금지하고 있다. <a href="http://www.cipro.co.za/legislation%20forms/patents/patent%20act.pdf">http://www.cipro.co.za/legislation%20forms/patents/patent%20act.pdf</a> 특허신청자가 발명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1978년 특허법 제57호를 개정하였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7873">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7873</a>	DTI
식물육종가 권리법 (1976년 제15호)	소정 식물품종에 대한 특정 육종가의 권리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종자저장에 대한 '농부의 특권' 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부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a href="http://www.vonseidels.co.za/downloads/Plant%20Breeders%20Rights%20Act%20No.%2015%20of%201976.pdf">http://www.vonseidels.co.za/downloads/Plant%20Breeders%20Rights%20Act%20No.%2015%20of%201976.pdf</a>	DAFF

정책/법/법안/규제	내용 및 웹링크	책임당국
식물개량법 (1976년 제53호)	특정 식물의 판매 및 특정 번식물질의 세척, 포장 및 판매에 대한 체계를 제공한다. <a href="http://www.nda.agric.za/docs/plant_improvement/default.htm">http://www.nda.agric.za/docs/plant_improvement/default.htm</a>	DAFF
해양생물자원법 (1998년 제18호)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BS를 명쾌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분석을 위한 경우 기존의 레크리에이션용 허가증은 충분한 양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활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물탐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675">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675</a>	DEA의 OC분과
국가환경관리법 (1998년 제107호) (NEMA)	헌법 및 국가환경정책백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절차 및 체계를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규제한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641">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641</a>	DEA가 주도
국가환경관리(NEM): 생물다양성법 (2004년 제10호)	1998년 제정된 NEMA 체제 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생물다양성 관리 및 보전을 규정하며 국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종과 생태계의 보호, 토착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토착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유전물질의 생물탐사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한다. <a href="http://www.info.gov.za/acts/2004/a10-04/a10-04a.pdf">http://www.info.gov.za/acts/2004/a10-04/a10-04a.pdf</a>	DEA 및 주 환경보전부
NEM; 보호지역법 (2003년 제57호)	보호지역의 공표 및 관리를 규정하고, 보호지역의 생태적 특징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한 해당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8034">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8034</a>	DEA

정책/법/법안/규제	내용 및 웹링크	책임당국
국가환경법 개정법 (2009년 제14호)	생물탐사 프로젝트 발견 단계에서 통보요건을 도입하고, 특정 생물탐사 허가증 발급 시 특정 개인의 지식을 고려하며, 국장 또는 수탁자가 생물탐사 기금을 관리하고 허가증의 갱신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였다. <a hre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21918_act14_2009.pd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21918_act14_2009.pdf</a>	DEA
국유림법 (1998년 제84호)	전반적인 목적은 삼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 관리 및 개발, 국유림 관리구조 개혁, 특정 삼림 및 수목 보호, 공동체 삼림관리 촉진 및 참여개선에 있다. 국유림 내 생물자원 수집 등 특정 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742">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70742</a>	DAFF, 국유림자문위원회, 국유림 휴양 및 접근 기금, 주 당국부서
국가유산자원법 (1999년 제25호)	국가자산의 우수관리를 촉진하고 공동체가 자신의 유산을 육성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문화 또는 현존하는 유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a href="http://www.dac.gov.za/acts/a25-99.pdf">http://www.dac.gov.za/acts/a25-99.pdf</a>	예술문화부(DAC)
전통의학중사자법 (2004년 제35호)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의 효험, 안전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체제를 제공한다. <a href="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7974">http://www.info.gov.za/view/DownloadFileAction?id=67974</a>	DOH
세계유산협약법 (1999년 제49호)	문화 및 자연유산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체 불가능한 소유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악화, 소실 또는 훼손, 혹은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손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유산의 빈곤화로 간주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a href="http://www.polity.org.za/article/world-heritage-convention-actno-49-of-1999-1999-01-01">http://www.polity.org.za/article/world-heritage-convention-actno-49-of-1999-1999-01-01</a>	DEA
<b>법안</b>		
지식재산법 개정법안 (2010)	토착지식을 국가유산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그러한 인식과 보호로부터 토착공동체가 이익을 얻을 것을 보장한다. <a hre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27226_100422b8-10.pd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27226_100422b8-10.pdf</a>	DTI

정책/법/법안/규제	내용 및 웹링크	책임당국
<b>규제</b>		
NEM 생물다양성법: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제 (2008년 제R138호)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생물탐사를 규제한다. 환경부 장관은 생물탐사용 생물탐사 및 수출 허가증 발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동 연구자와 공동으로만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이용 및 개발 또는 보전 촉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역량 향상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 이익공유협약은 거절될 수 있다. <a hre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11981_regulation138_of_2008.pdf">http://us-cdn.creamermedia.co.za/assets/articles/attachments/11981_regulation138_of_2008.pdf</a>	DEA
NEM 생물다양성법: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제 (2010년 제R173호)	CITES 규제상 열거된 멸종위협 또는 보호종의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규제한다. <a href="http://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legislations/nemba_wildfaunaandflora_g33002rg9240gon173.pdf">http://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legislations/nemba_wildfaunaandflora_g33002rg9240gon173.pdf</a>	DEA 및 주 관련부서
NEM 생물다양성법: 위협 또는 보호종에 관한 규제 (2007년 제R152호)	생물다양성법 제7장에 제시된 허가증 체계가 위협 또는 보호종 표본 관련 제한활동에 적용됨에 따라, 해당 체계를 추가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 위협 또는 보호종에 대한 특정 제한활동의 금지 및 멸종위협종의 야생개체군 보호를 규정한다. <a href="http://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legislations/nemba_threatenedspecies_regulations_g29657rg8638gon152.pdf">http://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legislations/nemba_threatenedspecies_regulations_g29657rg8638gon152.pdf</a>	DEA 및 주 관련부서
<b>주법률</b>		
각종 주 조례 및 법률	주정부차원에서 자연보전에 관한 28개의 법률 규제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멸종위협종 보전 및 어업·수렵을 위한 자연보호구역의 설립 및 보호를 허용한다. 이들 법 중 다수가 구식이며, 9개주에서 기존법의 폐지와 신규법 개발 및 시행이 각기 다른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법률규제들은 토착생물자원의 수집, 수확 및 채집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연구목적의 허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 환경보전부

## 유용한 웹사이트 및 연락처

유용한 웹사이트: 국제 기구		
기구명	설명	웹링크
생물다양성협약 (CBD)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 및 토착공동체, 시민 사회, 기업 및 지역 당국에게 유익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예를 들어 유전자원의 이용, 전통지식, 본 가이드라인, 국가 이행 등의 정보가 담긴 ABS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음	<a href="http://www.cbd.int">http://www.cbd.int</a>
식량농업기구-식량농업	2004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a href="http://www.planttreaty.org/">http://www.planttreaty.org/</a>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FAO-ITPGR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가 먹고 있는 작물의 다양성에 대한 농부의 막대한 기여를 인식함</li> <li>농부, 식물육종가 및 과학자에게 식물유전물질에 접근을 제공하는 글로벌 체계의 확립</li> <li>유전물질이 기원한 국가와 이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수령자와 공유하는 것을 확립함</li> </ul>	
무역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CTSD)	1996년 9월 제네바에 설립된 독립, 비영리, 비정부 기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국제 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행위자를 끌어들이	<a href="http://ictsd.org/">http://ictsd.org/</a>
국제민족생물학회 (ISE)	생물다양성 및 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토착 지역인의 중요한 역할과 생물 및 문화 다양성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원함. 민족생물학적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및 강령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a href="http://www.ethnobiology.net/">http://www.ethnobiology.net/</a> <a href="http://www.ethnobiology.net/ethics.php">http://www.ethnobiology.net/ethics.php</a>
윤리적 생물무역연합 (UEBT)	토종 생물다양성으로 유래되는 구성요소와 관련된 소싱을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회원들은 소싱 관행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하고 전통지식을 존중하며, 모든 공급망에 있어 공정한 공유를 보장할 것을 점진적으로 확립시 하는데 노력함	<a href="http://www.ethicalbiotrade.org/">http://www.ethicalbiotrade.org/</a>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국제연합(UN)의 전문기관으로 1967년에 설립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창의성을 보상하고, 혁신을 자극하며,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균형되고 접근 가능한 국제 지식재산권 체계를 개발하는데 전념함	<a href="http://www.wipo.int/">http://www.wipo.int/</a>

유용한 정부 연락처		
명칭	연락처	웹링크/이메일
국가 정부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Director-General Private Bag X 447, Pretoria, 0001 General Tel: 086 111 2468/ 012 310 3911	<a href="http://www.environment.gov.za">http://www.environment.gov.za</a> callcentre@environment.gov.za
농업임업수산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irector-General Private Bag X 250, Pretoria, 0001 General Tel: 012 319 6000	보건부(DOH)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General Private Bag X 894, Pretoria, 0001 Tel: 012 843 6816 General Tel: 012 843 6300	<a href="http://www.dst.gov.za">http://www.dst.gov.za</a>
토착지식체계청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Office)	National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Offic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012 843 6551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irector-General Private Bag X 84, Pretoria, 0001 Tel: 012 394 1564 General Tel: 0861 843 384	<a href="http://www.dti.gov.za">http://www.dti.gov.za</a>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Director-General Private Bag X 828, Pretoria, 0001 Tel: 012 395 9165 General Tel: 012 395 8000/ 9000	<a href="http://www.doh.gov.za">http://www.doh.gov.za</a>
주 정부		
Eastern Cape	Head of Department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ffairs Private Bag X 0054, Bhisno, 5605 Tel: 043 605 8000	<a href="http://www.dedea.gov.za/">http://www.dedea.gov.za/</a>
Free State	Head of Department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and Environmental Affairs Private Bag X 20801, Bloemfontein, 9300 Tel: 051 400 4731 Tel: 051 404 9600	<a href="http://www.detea.fs.gov.za">www.detea.fs.gov.za</a>



유용한 정부 연락처		
명칭	연락처	웹링크/이메일
<b>주 정부</b>		
<b>Gauteng</b>	Head of Department	<a href="http://">http://</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Affairs	P O Box 8769, Johannesburg, 2000 General Tel: 011 355 1900	<a href="http://www.gdard.gpg.gov.za/">www.gdard.gpg.gov.za/</a>
<b>Limpopo</b>	Head of Department	<a href="http://">http://</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urism	Private Bag X 9484, Polokwane, 0700 Tel: 015 293 8564 General Tel: 015 293 8300	<a href="http://www.ledet.gov.za/">www.ledet.gov.za/</a> <a href="mailto:info@ledet.gov.za">info@ledet.gov.za</a>
<b>Mpumalanga</b>	Head of Department	<a href="http://">http://</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urism	Private Bag X 11215, Nelspruit, 1200 Tel: 013 766 4179 General Tel: 013 766 4004	<a href="http://www.mpumalanga.gov.za/dedet/">www.mpumalanga.gov.za/dedet/</a>
<b>Northern Cape</b>	Head of Department	<a href="http://">http://</a>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e Conservation	Private Bag X 6120, Kimberley, 8301 Tel: 053 807 7306 General Tel: 053 807 7300	<a href="http://denc.ncpg.gov.za/">denc.ncpg.gov.za/</a>
<b>North West</b>	Head of Department	<a href="http://">http://</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ourism	Private Bag X 2039, Mmabatho, 2735 Tel: 018 389 5146/5104 General Tel: 018 389 5111	<a href="http://www.nwpg.gov.za">www.nwpg.gov.za</a>
<b>공공 독립기관</b>		
<b>KwaZulu-Natal</b>	Chief Executive Officer	<a href="http://">http://</a>
Ezemvelo KZN Wildlife	P O Box 13053, Cascades, 3202 General Tel: 033 845 1000	<a href="http://www.kznwildlife.com/">www.kznwildlife.com/</a>
<b>Western Cape</b>	Chief Executive Officer	<a href="http://">http://</a>
CapeNature	Private Bag X 29, Gatesville, 7766 General Tel: 021 483 0000	<a href="http://www.capenature.org.za/">www.capenature.org.za/</a>
<b>South African</b>	Chief Executive Officer	<a href="http://">http://</a>
National Parks	P O Box 787, Pretoria, 0001 General Tel: 012 426 5000	<a href="http://www.sanparks.org.za">www.sanparks.org.za</a>
<b>South African</b>	Chief Executive Officer	<a href="http://">http://</a>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Private Bag X 101, Pretoria, 0001 General Tel: 012 843 5000	<a href="http://www.sanbi.org.za">www.sanbi.org.za</a> <a href="mailto:info@sanbi.org.za">info@sanbi.org.za</a>

